

국내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확보 방안

국내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확보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책임연구관 김 윤 영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검토	1
1. 연구의 목적	1
2. 선행연구의 검토	4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9
1. 연구의 방법	9
2. 연구의 범위	11
3. 연구의 한계	12
제2장 이론적 배경	14
제1절 개념 정의	14
1. 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	14
2. 외국인밀집지역	17
제2절 외국인밀집지역 형성 배경과 기능	20
1. 외국인밀집지역 형성 배경과 유형	20
2. 외국인밀집지역 기능	25
제3장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 및 외국인밀집지역 실태	27
제1절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 현황	27
1. 외국인 입국자 추이	27
2.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	30
제2절 국내 외국인밀집지역 실태	31
1. 외국인밀집지역 현황	31

2. 외국인밀집지역 분류	33
제4장 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 범죄 및 수사의 한계	35
제1절 외국인밀집지역 범죄 실태	35
1.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	35
2. 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범죄 현황	48
제2절 외국인 범죄수사의 한계	60
1. 외사경찰 조직 현황	60
2. 외국인 범죄수사의 문제점	62
3. 외국인밀집지역 내 외국인 범죄 상존	68
제3절 외국인밀집지역 범죄 전망	72
1. 단기적 전망	72
2. 중·장기적 전망	74
제5장 국내체류 외국인밀집지역 치안대책	76
제1절 외사경찰 조직의 치안역량 강화	76
1. 외사경찰 조직 개편	76
2. 외사수사경찰 인력 및 예산 확보	81
3. 외사전문 요원 양성	88
제2절 외국인밀집지역 중심의 치안대책	93
1.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93
2.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97
3. 맞춤형 범죄예방활동	101
제6장 결론	104
<참고 문헌>	107

<표 목차>

<표 2-1> 유사 개념	15
<표 2-2>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개념 정의	16
<표 2-3> 외국인밀집지역 유형	22
<표 3-1>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누계, 승무원 포함)	27
<표 3-2> 체류목적별 외국인 입국현황(누계, 승무원 포함)	29
<표 3-3>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추이	31
<표 3-4> 등록외국인 현황	32
<표 3-5> 지방경찰청별 외국인밀집지역 현황	32
<표 3-6> 외국인밀집지역 기준	33
<표 4-1> '02~'11 최종별 외국인 범죄 단속 현황	36
<표 4-2> 최근 3년간('08~'11.6) 지방청별 외국인범죄 단속 현황	37
<표 4-3> 최근 3년간('08~'11.6) 경찰서별 외국인 범죄 단속 현황	38
<표 4-4> '07~'11 국적별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40
<표 4-5> 국내체류 외국인 국적별 범죄유형	41
<표 4-6> SOFA사건 현황	41
<표 4-7> 외국인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43
<표 4-8> 불법체류자 연도별 범죄율	45
<표 4-9> 불법체류 외국인 최종별 검거현황	46
<표 4-10> 2011년 경상남도 체류외국인의 내국인 대상 피의자 검거현황 ...	47
<표 4-11> 주요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범죄 증감 현황	51
<표 4-12> 2011년 내·외국인 범죄율(피의자 비율) 비교	51

<표 4-13> 국내체류 외국인 5대 범죄	52
<표 4-14> '04-'11년 외국인 전체 및 4대(용산·구로·영등포·안산단원) 밀집지역 강력범죄 ..	53
<표 4-15> 외국인범죄 단속결과(2011.4.5.~7.4)	55
<표 4-16> 체류외국인 수 및 국적별 피의자 비율(2011.4.5.~7.4)	55
<표 4-17> 외국인 국적별 강·폭력사범 검거현황	56
<표 4-18> 외국인 폭력조직(14개국 65개파) 실태	57
<표 4-19> 2011년 8월 기준 외사인력 결원 현황	64
<표 4-20> 외국어 전문요원 언어권별 현황	65
<표 5-1> 서울 국제범죄수사대 관할구역 및 수사대 인원 현황	79
<표 5-2> 체류외국인 150만 시대 대비 외사경찰 인력 소요 예상	83
<표 5-3>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비교	83
<표 5-4> 외국의 소수민족 경찰관 채용 현황	84
<표 5-5> 통역요원 지역별 현황('09년)	91

<그림 목차>

<그림 2-1> 외국인밀집지역 선정 기준	19
<그림 3-1> 외국인 입국자 추이(누계, 승무원 포함)	28
<그림 3-2> 주요 국가 국민 입국현황(누계, 승무원 제외)	29
<그림 3-3>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30
<그림 4-1> 전국/ 4대 밀집지역간 외국인범죄발생 변화 추이 비교	49
<그림 4-2> 전국/ 밀집지역간 외국인범죄발생 비중 변화 추이 비교	49
<그림 4-3> 전국·밀집지역 10만 명당 외국인범죄발생 추이 비교	50
<그림 5-1> 일본 교통규칙 홍보사이트	95

국내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확보 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검토

1. 연구의 목적

국내체류 외국인은 2007년 8월 24일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2월말 현재 2010년 1,261,415명 대비 10.6% 증가한 1,395,077명에 이르고 있다.¹⁾ 이는 우리나라 주민등록 총 인구(50,717,713명)의 2.8%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²⁾ 우리나라 역시 다인종·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한 것이다.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정부의 세계화와 개방정책에 따른 입국간소화 조치와 함께 경제성장에 따른 현장 노동인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이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011년 12월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1. 8면; 우리보다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11년 현재 체류외국인은 2,078,480명으로, 일본 인구(약 1억2,700만명) 대비 1.63% 수준에 이르고 있다.

2)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4개월 간에 걸쳐 실시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거주 외국인주민은 1,265,006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1,139,283명보다 11% 증가하였다(행정안전부 다문화사회지원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2011.6. 3면).

비교적 싼 저소득 국가 중심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이 입국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비가 비교적 저렴한 대도시 일대와 공단지역 주변 등을 중심으로 밀집지역을 형성하여 거주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취약한 노동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생적 범죄조직들에 의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은 외국인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 내지 혐오감(Xenophobia)과 함께 치안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주로 출입국법 위반자나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했으나, 이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지능화·광역화되는 등 사회문제로 급부상하여 치안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³⁾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했던 조선족에 의한 내국인 여성 살해사건은 대표적인 흉악범죄였다.⁴⁾

그럼에도 정부의 외국인 정책기조가 외국인 방문취업제 허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외국인 이민 허용정책 등 개방과 인권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체류외국인은 더욱 증가될 것이고,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종교·인종간의 갈등으로 인한 외국인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⁵⁾ 특히,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다문화를 반대하는 ‘반이슬람’을 내걸고 자행한 무차별적인 총기

3) 안산단원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중국 조선족 동포 장모(41)씨를 2011년 2월 20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월 19일 오후 10시55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주택가 사거리에서 조선족 동포 이모(30), 한모(3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옆구리 등을 찔러 한씨를 숨지게 하고 이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강창구 기자, “안산단원경찰, 동료 살해한 조선족 긴급 체포”, 연합뉴스, 2011.2.20).

4) 2010년 6월에는 방글라데시인 P모씨는 직장상사의 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외국인의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는 법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압이 쉬운 미성년자들을 범행에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서울신문, 2010, 8, 25).

5) 김윤영,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확보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1호, 치안정책연구소, 2007, 77면.

난사 사건을 비롯하여 2005년 프랑스 이민자들(아랍계 저소득층 등)의 대규모 소요사태(2005.10.27-11.17 3주간), 잉글랜드 중부의 소도시 로젤스에 발생한 아프리카계와 아시아계간에 충돌한 인종폭동(2005.10.22-11.24)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국내 체류외국인에 의해 발생한 시위가 대규모 폭력사태로 진행된 적은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즉, 국내체류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직업, 종교, 인종, 문화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집단화, 조직화, 정치세력화하여 집단저항이나 대규모 폭력시위 연계 가능성은 상존할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이러한 사건에 대한 치안정책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체류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확보 방안과 관련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7년 필자가 경찰청 외사국 의뢰로 수행한 보고서인 “외국인밀집지역 범죄실상 및 치안확보 방안 연구”를⁶⁾ ‘치안정책연구’지에 발표한⁷⁾ 이후, 이와 관련한 한 수편의 학위 논문들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이들 논문들은 필자의 논문을 상당부분 차용하고 있으며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용어 등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⁸⁾

따라서 이 보고서는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치안대책 방안과 관련한 그동안의 연구가 외사수사 실무에 반영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인식하에, 외국인밀집지역의 현황과 범죄 실태를 분석한 후 그에 따른 효율적인 치안확보방안을 미시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국내체류 외국인 실태와 관련정책을 비롯하여 이미 다문화사회로 인한 다양한 외국인 범죄 등

6) 김윤영, 외국인밀집지역 범죄실상 및 치안확보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단기과제), 2007.

7) 김윤영,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확보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1호, 76-118면.

8) 김두수,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9; 정대권, “외사경찰 조직의 효율적 대응방안”,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등 이외에도 수편의 논문이 있다.

사회적 갈등을 겪어 왔던 선진외국의 치안대책 자료 등을 검토할 것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최근 한국의 외국인 정책 혹은 ‘다문화’와 관련한 연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성화되고 가시적인 연구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족이 국내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체류 외국인들은 낯선 환경과 문화, 외로움 등을 극복하고자 같은 민족끼리 모여 살고자하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밀집지역을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족간 갈등, 민족간 갈등, 내국인과의 갈등 등에 의해 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행태가 조직화, 강력화, 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체류 외국인밀집지역과 관련한 범죄대책 연구는 필자가 2007년 처음으로 ‘치안정책연구’지에 기고한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확보 방안 연구” 이외에 별다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의 연구 외에 관련 연구가 몇몇 있지만 필자의 논문으로 그대로 인용 재인용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밀집지역과 관련한 그동안의 연구 경향은 다문화사회⁹⁾ 연구, 외국인밀집지역의 공간분포 연구, 외국인 체류 유형별 연구,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대책 등 4가지 분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한다.

9) 박세훈 외(2009)는 외국인 인구비중이 2% 내외일 경우를 다문화사회 진입단계, 5%를 다문화사회 성숙단계, 10%를 다문화사회 심화단계로 구분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비중 2% 내외로 다문화사회의 진입단계로 보았다. ; 박세훈 외,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1):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09, 197-199면.

첫째, 다문화 사회와 관련한 정책연구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김이선 외, 2007; 장미혜 외, 2008; 최종렬 외, 2008; 김혜순 외, 2007; 오경석, 2007). 이 연구들은 최근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현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문화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범죄와 관련한 치안대책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둘째, 외국인의 공간분포를 다룬 연구로는 강경조(2002), 김은미(2007), 이진영(2011), 한기수(2011), 박세훈(2010, 2011) 등이 있다. 강경조(2002), 김은미(2007)의 연구는 초기 연구로서 강경조의 “서울시 외국인 거주에 관한 공간분석”은 통계청 통계연보와 서울시 주민등록자료를 기초로 하여 서울시의 외국인 공간분포를 분석하고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외국인의 유형별·국적별 교차분석이나 2000년 이후의 상황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국내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정책적 시사점은 한계를 지닌다. 김은미의 “서울 내 외국인 문화 활성화 방안”은 서울시의 외국인 마을현황과 그 배경을 분석하고 있으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통계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¹⁰⁾

이진영의 “수도권에서의 외국인 거주지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은¹¹⁾ 수도권을 대상으로 외국인 거주지가 공간적으로 어떠한 분포 패턴을 보이며, 그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기수의 “외국인 밀집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주거환경 선호요인 분석: 글로벌 빌리지 6곳을 중심으로”는 동부이촌동, 이태원1동, 한남동, 연희동, 연남동, 반포4동, 역삼1동 등 6곳을 중심으로 외국인밀집지역의

10) 박세훈,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통권 제64권, 국토연구원, 2010.3, 63면.

11) 이진영, “수도권에서의 외국인 거주지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2011.

거주환경을 분석하고 특성요인을 도출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거주환경을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다보니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밀집지역 전반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박세훈 외의 “다문화시대의 도시관리전략: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¹²⁾는 2008년 기준 전국의 국내체류 외국인의 유형별 공간분포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후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라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전문 인력으로 분류하면서 국적별 분포 특성을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공단배후 노동자주거지, 대도시 저가 주택지, 외국관련시설 주변지역, 전문 인력의 고급주거지로 분류하고,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분석한 후 외국인밀집지역의 실태조사 추진,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지역사회 구축, 외국인밀집지역 지원제도 도입 등을 도시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외국인 관련 이론 및 현황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¹³⁾ 이외에도 박세훈의 “한국의 외국인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¹⁴⁾ 향후 한국의 도시사회는 외국인 증가와 외국인밀집지역의 형성으로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나라 외국인밀집지역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추적하고 유형별 실태분석을 통해 외국인밀집지역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의 공간분포 특성과 국토·도시정책 과제”¹⁵⁾ 외국인의 유형별, 국적별 분포, 외국인밀집지역

12) 박세훈, “다문화시대의 도시관리전략: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제309호, 국토연구원, 2011.1, 1-6면.

13) 이진영, “수도권에서의 외국인 거주지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13면.

14) 박세훈,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제23집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0.3, 69-100면.

15) 박세훈, “외국인의 공간분포 특성과 국토·도시정책 과제”, 국토(구 국토정보), 통권342호,

형성과 지역사회의 변화 등을 분석한 후,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국토도시정책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¹⁶⁾는 외국인의 공간분포를 체류자격별, 국적별로 분석하여 그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2009년 국토연구원 연구과제인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를 보완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외국인밀집지역의 공간분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으나,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현황과 그에 따른 치안대책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국내체류 외국인의 유형별 연구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설동훈, 1999; 이정환·이성용, 2007; 정연주, 2001),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안영진·최병두, 2008),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김혜순, 2008; 황정미, 2009)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 역시 국내체류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넷째,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범죄와 관련한 치안대책 연구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윤영의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확보 방안” 있다. 이 연구는 국내체류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 현황과 유형 그리고 특징을 분석한 후 치안대책을 제시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으나, 2001-2006년의 자료들을 활용하다보니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현황과 대책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후 국내체류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와 관련한 대책을 제시하는 수편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 논문 중 몇몇 통계자료만 업데이트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내용은 물론 결론 부분까지 이 논문을 그대로 인용, 재인용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김두수 석사학위 논문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의 외

2010.4, 20-30면.

16) 박세훈,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통권 제64권, 국토연구원, 2010.3, 59-76면.

국민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2009)이다. 이 글은 필자의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확보 방안”을 제목만 “외국인 집단거주 지역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으로 바꾼 후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 실태와 문제점, 범죄 통제 개선방안 등을 상당부분 필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출처도 『치안정책연구』를 ‘치안논단’¹⁷⁾으로 오기함으로써, 이후의 다른 논문들이 이를 재인용함에 따라 출처가 지속적으로 ‘치안논단’으로 표기되는 오류를 낳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원희의 “한국 내 외국인 조직범죄와 경찰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고려대 경찰법학과, 2010), 정대권의 “외사경찰 조직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영남대 행정대학원, 2010),¹⁸⁾ 정광현의 “외국인범죄 치안대책 연구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인하대 행정대학원, 2010) 등이 있다. 이 논문들 역시 필자의 논문 상당부분을 인용한 김두수의 글을 재인용함으로써 출처 표기의 오류와 함께 필자의 글을 인용하는 한계를 낳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에서와 같이 필자가 2007년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확보 방안”을 발표한 이후,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진하나마 수편의 연구 성과물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자의 이주배경, 국내 적응과 주거실태, 체류외국인으로 인한 기존 도시공간의 변화 등 외국인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와 관련한 도시정책이 주된 관심사가 되었고, 외국인 범죄 실태 분석과 그에 따른 치안대책 방안은 필자의 논문을 대부분 차용하는 한계를 보여 주고 있었다.¹⁹⁾

17) 필자의 글은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지인 치안정책연구 제21호에 수록한 것으로서, 목차 편집 과정에서 ‘치안논단’으로 분류하여 수록한 것이다.

18) 이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결론 부분까지 필자의 글을 주석없이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19) 이외에도 국내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분포와 치안확보 방안은 외국인정책에 있어 기초적인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미비한 데에는 우선 외국인에 대한 기초통계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1차적인 원인이 있다. 그동안 등록외국인에 대한 통계는 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분류가 되어

결국, 선행연구 검토 결과 최근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내·외국인과의 갈등은 외국인 혐오증으로 확산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인 범죄와 관련한 치안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불법체류자들의 사회적 문제가 본격화되었던 2000년부터 국내체류 외국인문제와 관련하여 학계, 단체, 개별 연구자들은 문헌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 관찰 및 현지조사, 법 및 제도적 분석, 심리적 분석, 사회·문화적응 이론, 사회복지이론, 통계적 접근, 종교적 접근 방법을 통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이 보고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면접조사 등 분석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자 한다. 문헌조사는 연구의 전 분야에 걸쳐서 활용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서적과 학술지 논문, 간행물, 유관기관 정책연구자료 등 기존의 연구 자료를 비롯하여 신문기사, 인터넷 검색자료, 시민단체 자료 등을 참고할 것이다. 특히 국내체류 외국인밀집지역 범죄문제와 관련한 치안대책 연구는 필자의 연구 외에 새롭게 시도된 연구물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학술적 연구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단

있지 않아 자료를 분석·가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박세훈,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63면).

편자료가 많은 일간지 기획기사나 르포기사, NGO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학술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든 단점이 있지만 문헌자료, 면접조사 자료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분석한다면 현실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분석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하 출입국) 통계자료와 경찰청 외사국 및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경찰서 통계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출입국 통계자료의 계량 분석을 통해 국내체류 외국인의 유형별, 국적별 공간적 분포를 파악할 것이다. 국내체류 외국인의 유형은 체류 목적에 따라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전문인력, 기타로 구분하고, 국적은 국내체류 인구수가 많은 외국인 중심의 공간분포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경찰청 외사국의 외국인 범죄 통계자료를 통해 외국인범죄의 유형과 국적, 공간 분포 등을 분석할 것이다.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유형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를 중심으로 범죄건수, 국적별, 지역별 분포 등으로 구분하고, 주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심층면접조사(in depth interview)는 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들의 의식과 생활 등 문화와 범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지역사회에 정통한 관할경찰서 담당 외사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직접면접과 전화인터뷰를 적절히 사용할 것이다. 특히, 경기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 직원의 인터뷰와 외국인밀집지역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자료를 보완할 것이다. 이외에도 설문조사가 필요한 분야는 연구시간의 제약과 개인조사의 신뢰도를 고려해서 공신력이 높은 연구조사기관의 연구결과를 2차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이외에도 해외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을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외국인 출입국관리 자료와 외국인 범죄 및 치안대책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사용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이 글의 연구범위는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현재까지를 중심으로 전국에 분포된 외국인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간적 범위의 광범위성을 극복하고자 대표적인 외국인밀집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분석할 것이다. 또한 90일 이상 등록외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밀집지역 분류는 경찰청 기준 ‘가’급, ‘나’급에 따라 분석하고,²⁰⁾ 이외 행정안전부에서 분류한 인원별 기준은 보조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경찰청의 분류기준을 주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보고서가 외사경찰의 외국인범죄 수사 및 범죄대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경찰청에서 분류한 외국인밀집지역 범죄 현황 외에는 별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범죄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은 경찰, 검찰, 법무부(출입국), 관세청 등이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외적인 수사 조직망을 가지고 외국인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외사경찰의 외국인 범죄 통계를 기초 자료로 삼고, 검찰,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등의 자료는 필요시 보조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이 논문의 각장의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방법과 연구의 한계 및 연구 방향을 밝히고,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 외국인밀집지역 등에 대한 개념정의와 함께 국내체류 등록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살펴본 후,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 배경과 유형 및 기능 등을 고찰할 것이다. 제3장은 외국인 입국 추이 및 국내체

20) 경찰청은 관할경찰서 내 등록외국인 수 7,000명 이상이거나 관할 인구대비 4% 이상 지역은 ‘가’급, 이 외 관할경찰서 내 외국인 3,000-7,000명 또는 외국인 비율 2-4% 지역을 ‘나’급으로 분류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다룰 것이다.

류 외국인 현황, 외국인밀집지역 현황과 분류, 외국인 유동지역 분류, 특정국적 다수체류지 및 대표적 외국인밀집지역 등을 고찰한다.

제4장은 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 범죄 원인, 유형 및 사례, 특징 등을 분석한 후, 외국인밀집지역 범죄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범죄 수사의 한계와 문제점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향후 예상되는 외국인 범죄 전망을 제언할 것이다.

제5장은 전술한 2, 3, 4, 5장의 분석 내용을 기초로 치안대책을 미시적으로 제언할 것이다. 즉, 외사경찰 조직의 치안역량 강화 방안과 외국인밀집지역 중심의 범죄대책을 미시적으로 제언할 것이다. 제6장 결론은 전술한 내용의 총평과 더불어 포괄적 차원의 정책제언을 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국내체류 외국인밀집지역을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봉착하는 문제가 자료수집의 한계성이다. 국내체류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분류와 현황, 범죄 실태와 관련한 자료는 경찰청 외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유일하다. 그럼에도 인종, 종교, 국가간 갈등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자료 공개의 제한성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자료접근의 한계는 경찰 주제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었다.

특히, 외국인밀집지역 범죄와 관련한 통계자료의 중요성 가운데 하나가 최근 자료를 사용할 때만이 현실 가능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가능한 2011년 말까지의 통계자료를 사용할 것이나, 자료수집의 한계가 따르는 부분에서는 2011년 이전 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그러다보니 일관성이 있는 통계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에 파견된 경찰주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선진 외국의 외국인밀집지역 범죄 실태와 치안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따른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개념 정의

1. 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

가. 외국인의 개념

외국인의 개념은 국적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 외국인에 대한 개념은 그 범위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외국인은 자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무국적자와 외국국적을 가진 자 모두를 포함한다.²²⁾ 후자의 경우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하나, 무국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1) 헌법 2조 1항은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적법(법률 제5431호, 1997.12.13전문개정) 제2조 1항과 2항에 국민이 되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1항은 “①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자 ②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③ 부모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고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고 하였고, 제2항은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적법은 인지(제3조), 귀화(제4조), 국적회복(제9조), 국적의 재취득(제11조) 등에 의한 국적취득도 규정하고 있다.

22) 무국적자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사인(私人)만을 의미한다. 즉, 공적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 예컨대 국가원수, 외국사절 및 군대의 구성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의미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나 무국적자(불법체류자 포함)로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응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이 대한민국의 주권에 복종해야 하나, 조약 및 국제법규에 의하여 상이한 지위를 가지기도 한다. 생명, 신체, 명예, 인격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의 경우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²³⁾

<표 2-1> 유사 개념

◆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출입국관리법 제2조)												
◆ 재한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법무부)												
◆ 다문화가족 :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여가부)												
◆ 다문화가정 :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으로 다문화가족 외에 외국인근로자 가족 등도 포괄(법률상 용어 아님, 교과부)												
◆ 외국인주민 : 90일 초과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지역사회에서 자치단체의 지원·관리가 필요한 대상·범위를 정한 것으로 법률상 용어는 아님 ²⁴⁾												
- 등록외국인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유학생, 기타												
- 국적취득 외국인 : 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취득자												
<용어사용 연혁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10px;"> <tr><td>'06년</td></tr> <tr><td>거주외국인</td></tr> <tr><td>90일 이상 거주하는등록외국인</td></tr> </table>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10px;"> <tr><td>'07년</td></tr> <tr><td>외국인주민</td></tr> <tr><td>현행과 개념 동일</td></tr> </table>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10px;"> <tr><td>'08~</td></tr> <tr><td>이주민</td></tr> <tr><td>현행과 개념 동일</td></tr> </table>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tr><td>'08. 5~</td></tr> <tr><td>외국인주민</td></tr> <tr><td>현행과 개념 동일</td></tr> </table>	'06년	거주외국인	90일 이상 거주하는등록외국인	'07년	외국인주민	현행과 개념 동일	'08~	이주민	현행과 개념 동일	'08. 5~	외국인주민	현행과 개념 동일
'06년												
거주외국인												
90일 이상 거주하는등록외국인												
'07년												
외국인주민												
현행과 개념 동일												
'08~												
이주민												
현행과 개념 동일												
'08. 5~												
외국인주민												
현행과 개념 동일												

23) 이원희, “한국 내 외국인 조직범죄와 경찰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 논문, 2010, 5면.

<표 2-2>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개념 정의

체류 외국인	등록 외국인
국내 전체 체류인구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90일 이상 국내 체류외국인은 거주지 등록 의무화(단, 주한 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SOFA협정에 따른 주한미군·군속과 가족,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 제외)

나. 외국인 범죄

외국인 범죄란²⁵⁾ 일반적으로 범죄의 주체가 내국인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자의 범법행위를 말한다.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²⁶⁾ 그러나 형법 제5조는 내란 및 외환죄 등의 경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 영토에서 범한 경우에도 외국인 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다.²⁷⁾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국내체류 미군·군속·가족들이 범한 범죄도 외국인 범죄에 해당된다. 중국국적의 동포(조선족), 미국시민권자인 재미교포, 일본 국적의 재일교포 등에 의한 범죄도 외국인 범죄에 포함된다. 다만, 북한주민은 헌법과 판례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북한주민에 의한 범죄는 외국인 범죄로 보지 않는다.²⁸⁾

이 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범죄란 국내체류 등록외국인²⁹⁾ 또는 불법체류자들이 국내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를 의미하며, 다인종·다문화가 공존하는 외국인밀집지역은 이질문화, 조국애, 민족애, 동료애 등을 기초로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편람, 행정안전부, 2010.12, 1면.
 25) 외국인범죄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의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나, 형법 제5조에서 정한 내란, 외환죄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범한 경우에도 포함하고 있다.
 26) ‘국제성 범죄’는 2개 이상 국가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범죄(마약밀수 등)를, ‘외사사범’은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여권·출입국·외국환사범 등)를 의미한다.
 27) 임창호,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287면.
 28) 이원희, “한국 내 외국인 조직범죄와 경찰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7면.
 29) ‘등록외국인’이란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사증을 소지하고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로, ‘장기체류외국인’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2. 외국인밀집지역

가. 외국인밀집지역 개념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용어는 통일되지 않는 가운데, 연구자들의 성향에 따라 ‘외국인 집단거주지’, ‘외국인 마을’, ‘외국인 집단촌’, ‘외국인 거주지역’, ‘외국인 과밀지역’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외국인밀집지역’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국토연구원은 외국인밀집지역을 ‘외국인이 거주국의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않고 상호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발전된 공간으로, 공간적으로 특정지역에 동일 국가 출신자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면서, 음식점 상가 등 연관 인프라가 형성되고 사교활동과 정보교환의 중심지로 기능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들의 생활공간과 관련인프라를 중심으로 정의한 것이다.³⁰⁾ 이러한 ‘외국인밀집지역’은 국내 체류외국인들이 그들과 관련된 학교, 종교 시설 등이 존재하거나 출퇴근이 용이하고 거주비가 비교적 싼 공단지역 또는 영세제조업체들이 산재한 주변지역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들은 생활비 등 체류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같은 국가 및 지역 출신의 외국인들이 합숙·자취 등 공동거주를 통해 자연스럽게 밀집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외국인밀집지역’이란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자국민들끼리 정보교환이나 모국 문화를 공유하고자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사회 공동체(Community)를 의미한다. 이 경우 주거지와 함께 종교 및 학교시설, 식당·상점·유흥시설 등 상업 인프라가 들어서게 된다.³¹⁾

30) 박세훈 외,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1):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10, 19-20면.

나. 외국인밀집지역 범위 기준

외국인밀집지역 범위 역시 통일되지 못하고 연구자의 필요성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외국인밀집지역 통계가 연구자의 사용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내 체류외국인이 작게는 1천명 이상 지역을 외국인밀집지역으로 보는가 하면 많게는 2만 명 이상 이상 지역을 기준으로 삼는 등 그 편차가 심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범죄와 관련한 치안확보방안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경찰청에서 분류한 기준에 따르기로 한다. 경찰청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및 249개 경찰서 관할 내 등록외국인³²⁾ 수를 대상으로 경찰서관할지자체 내 외국인 범죄발생 현황, 외국인 범죄다발지역, 등록외국인수 기준 국내 최다 체류 상위 10개국 외국인 국적 등을 조사한 바 있다.

31)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주거지를 선정하는데 중요 고려사항으로 교통 혼잡우려와 지하철이나 회사 부근을 선호한다는 교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쇼핑, 의료시설, 유희환경이 중요하다는 생활편리성(20%), 의사소통이 편하고, 안전하고 사교적인 외국인 거주지역을 주택선정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5%가 되었다. 공원, 전망 등과 같이 자연환경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10%로 나타났고 자녀교육과 외국인 학교 부근이 중요하다고 교육환경을 고려사항으로 뽑은 비율이 10%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안전(8%), 회사근접성(7%), 주택시설(5%) 을 중요 고려사항으로 선택하였다(한기수, “외국인 밀집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주거환경 선호요인 분석”,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11.6, 29면 재인용).

고려사항	비율	세부사항
교통	25%	교통혼잡우려, 지하철이나 회사부근을 선호
생활 편리성	20%	쇼핑, 의료시설, 유희환경
외국인 거주지역	15%	의사소통, 안전, 사교
자연환경	10%	전망, 공원, 공기
교육환경	10%	자녀교육, 외국인학교 부근
안전	8%	경비시설, 전자경비시스템 선호
회사근접성	7%	교통편리성, 회사인접성
주택시설	5%	수영장, 헬스클럽, 가구 및 각종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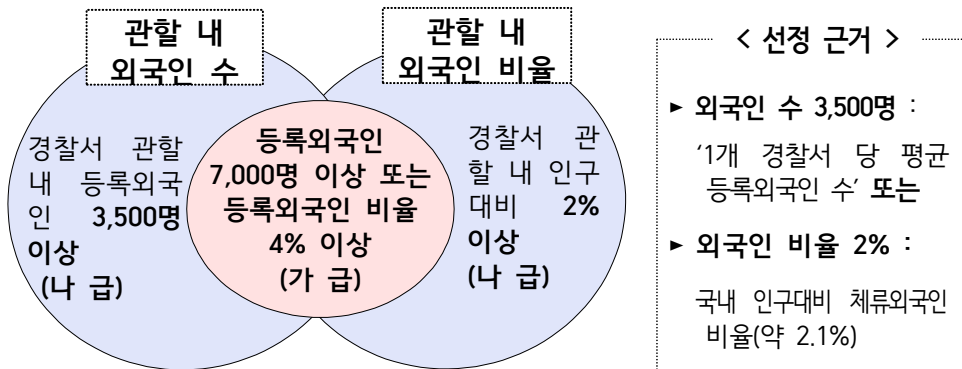
자료 : NiceRent.com

32) 등록외국인은 국내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등록 의무화하였다. 다만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SOFA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군속과 가족,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은 제외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2011년 10월 기준 출입국의 시·군·구 별 등록외국인 자료,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범죄발생 통계 등을 활용하였다.³³⁾

외국인밀집지역은 경찰서 관할 지역 내 전체 인구 대비 등록외국인 수를 기준으로 ‘가’·‘나’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외국인밀집지역 선정 기준의 전체 조건으로는 전체 등록외국인 체류 현황을 고려하여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을 외국인밀집지역으로 규정하였다. 전국 평균은 ‘경찰서별 평균 등록외국인 수(약 3,500명)’와 ‘국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약 2%)’을 적용하였다.³⁴⁾ 이에 따라 경찰서 관할 지역 내 등록외국인 3,500명 이상 또는 외국인 비율 2% 이상인 지역을 ‘외국인밀집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가·‘나’급 분류는 관할 경찰서 내 등록외국인 수 7,000명 이상이거나 관할 인구대비 4% 이상인 지역을 ‘가’급으로, 그 외 지역은(외국인 3,500~7,000명 또는 외국인 비율 2% ~ 4%) ‘나’급으로 구분하였다.³⁵⁾

<그림 2-1> 외국인밀집지역 선정 기준



* 자료: 경찰청 외사국, 2011년 외국인 체류실태 분석결과, 3면.

33) 경찰청 외사국, “2011년 외국인 체류실태 분석결과”, 경찰청, 2012.2, 2면.

34) 선정기준은 ① 경찰서별 평균 등록외국인 수 = 전체 등록외국인 수 ÷ 전국 경찰서 수 ② 국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 전체 등록외국인 수 ÷ 국내 인구 × 100

35) 경찰청 외사국, “2011년 외국인 체류실태 분석결과”, 3면.

제2절 외국인밀집지역 형성 배경과 기능

1. 외국인밀집지역 형성 배경과 유형

가. 외국인밀집지역 형성 배경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들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이주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학교시설, 대사관, 직장, 교통 등 거주생활에 편리한 시설을 중심으로 모여들면서 밀집거주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퇴근이 용이하고 거주비가 비교적 저렴한 공단지역이나 영세제조업체들이 산재한 대도시 주변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들은 생활비 등 체류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같은 국가 및 지역 출신자끼리 합숙·자취 형태의 공동거주를 통해 자연스럽게 밀집지역을 형성한다. 이러한 외국인밀집지역 주변에는 종교·학교·상업(상점, 식당, 유흥시설 등)시설 등이 부수적으로 형성되어 외국인들이 모이고 교류하는 거점이 되고 있다.³⁶⁾

국내 체류외국인들의 집단거주지는 시기적으로 각기 다른 형성 배경을 가지고 있다. 개항기인 일제시기에는 일본인들이 개항장을 중심으로 신시가지를 조성하여 밀집지역을 형성하였다.³⁷⁾ 해방부터 1960년대는 주한미군 주둔지역을 토대로 미군 서비스업인 상가, 유흥시설, 기지촌 등이 들어섰다. 서울의 용산과 이태원은 오늘날까지 대표적인 외국인밀집지역으로 존재하고 있다.³⁸⁾ 1970~80년대는 선진국가의 주재원 중심으

36) 박세훈 외, 앞의 책, 20면 참조; 외국인들은 종교 및 상업 시설 등을 같은 민족끼리 정보를 교환한다. 서울 광희동에 있는 몽골타워는 대표적인 예가된다.

37) 이시기 일본인들은 서울의 충무로 및 용산지역, 부산 중구 광복동 일대, 인천 중구 중앙동 일대, 목포시 유달동 일대, 군산시 신흥동 일대 등에 집단거주지를 형성하였다.

38) 이 시기 주한 미군의 주요 주둔지는 서울의 용산, 경기도 의정부·동두천·과주, 경기도 평택 등이다.

로 국가별 밀집지역이 형성되었는데, 서울의 서초동 서래마을, 한남동 독일인 마을, 동부이촌동 일본인 마을 등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외국인밀집거주지역이다. 1990년 이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밀집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한국경제의 급성장,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등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임금 상승과 함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1990년대 초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다.³⁹⁾ 특히, 2004년 고용허가제, 2007년 방문취업제의 도입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다인종, 다문화 공동체가 형성하기 시작했다. 안산시 원곡동은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대표적인 다문화공동체가 되었다.

나. 외국인밀집지역 유형

외국인들은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서울에 가장 많은 밀집지역을 형성하여 거주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인들의 밀집지역을 비롯하여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인, 아프리카인들의 교류거점도 서울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에는 공단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지역을 형성하여 거주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와 같이 약 65개국 이주민 5만 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프라를 구축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장기숙사나 단독주택에 산재하여 거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지역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들은 자국의 문화 공유나 교육 등의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의 외국인밀집지역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있다. 외국인밀집지역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여섯 가지 유형 즉, 산업단지 및 영세업체 공단

39) 박세훈,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제 23집 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0.3, 76-81면 참조.

주변지역의 노동자 거주지, 대도시 내 비교적 값싼 주택지, 군사시설 지역, 종교시설 중심의 거주지, 전문 인력 중심의 고급 주택지, 유학생 중심 거주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⁴⁰⁾ 이러한 외국인밀집지역 유형의 입지 조건 및 특징과 대표적인 사례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3> 외국인밀집지역 유형⁴¹⁾

유형	입지 조건 및 특징	사례
산업단지 주변 노동자 거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산업단지나 영세업체 공단 주변지역 • 한국제 중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인 등 아시아 지역의 저소득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영등포구 가산동, 안산시 원곡동, 남양주 마곡
대도시 내 값싼 주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교통 지역 • 일용직, 간병인,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한 국제 중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가산동, 관악구 봉천동, 가산동
군사시설 주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부대 주변으로 중심으로 기지촌 형성 • 이태원 등 미군부대 주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용산구 이태원, 경기도 평택과 오산
종교시설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당, 이슬람 사원 등 종교시설 주변 • 무슬림, 천주교 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슬람 사원(무슬림), 종로구 혜화동 성당(필리핀인)
전문인력의 고급주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사관 직원, 외국인 회사 임직원은 외국 인학교 주변지역 • 외국인학교, 고급 음식점과 카페 등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반포 서래마을, 이촌 1동 일본인 마을
유학생 대학교 주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 학교, 연구원 근무지 주변지역 • 한국경제 위상 높아지고, 한류열풍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대덕연구단지, 청주대학교 주변, 서울 자양동

첫째, 산업단지와 영세업체 공단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밀집지역이다. 이 지역은 주로 공단을 비롯한 산업단지 주변에 분포한다. 이 지역에는 중국인 및 조선족,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대부분 저소득 국가 근로자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다. 안산시 원곡동의 경우 반월공단

40) 박세훈은 외국인밀집지역을 4가지 유형 즉, 공단배후 노동자거주지, 대도시 저렴한주택지, 외국관련시설 주변지역, 전문인력의 고급거주지로 분류하고 있다(박세훈,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81면).

41) 박세훈, 위의 글, 81면 참조 재정리.

과 시화공단 인접지역이라는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들기 시작했다.⁴²⁾ 최근에는 가리봉동 일대의 조선족들이 임대료가 저렴하고, 지하철 교통이 편리한 가산동, 독산동으로 몰려들면서 밀집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수도권 인근 공사장, 시화공단,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내 영세 기계공장 근로자들이다. 이외에도 경기도 남양주시 마곡, 시흥 정왕동, 대구시 달서구 등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들어 밀집지역을 형성하였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외국인밀집지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비교적 거주비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지역 내에 형성된 외국인밀집지역이다. 이 지역은 주로 일용직, 간병인, 건설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한국계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한국어 구사능력이 가능한 조선족들은 주로 대도시에서 필요한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대도시 내 거주비용이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찾아 밀집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의 가리봉동, 대림동, 봉천동, 가산동 등은 집값이 싸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인해 차이타운이 급속히 형성된 곳이다.

셋째,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된 외국인밀집지역이다. 이태원은 1970-1980년대 미8군 사령부를 중심으로 외국인 전용주택과 대사관을 비롯하여 기지촌이 형성된 곳이다. 최근 평택에 새로 형성된 미군부대 주변을 중심으로 밀집지역이 발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산 미군부대 주

42) 경기도 안산 단원구 원곡동은 100여 개국의 외국인들이 밀집지역을 형성하여 거주하는 곳으로 2009년 5월 다문화특구로 지정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주외국인 노동자들이 원곡동을 중심으로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내국인과 합법적 이주민, 불법 체류자가 함께 모여 살고 있다. 이곳은 외국인이 자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파는 식당만 해도 150곳을 넘는다. 휴일이면 서울, 수원, 인천, 화성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이주노동자들이 친구나 친지를 만나 정보를 교환하며 자국의 생필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변을 비롯하여 동두천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밀집지역이 발달되었다.

넷째,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된 외국인밀집지역이다. 이태원은 1990년대 중반까지 주한 미군들을 상대로 한 유흥가, 쇼핑 중심지였으나, 2000년대 이후 한남동 이슬람 서울성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이슬람 교도들이 예배를 위해 매주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밖에 창신동 네팔타운, 혜화동 필리핀거리, 이태원 나이지리아인 등도 종교 등의 이유로 특정 국가 외국인들이 밀집지역을 형성하여 살고 있다. 또한 일주일에 하루만 교류의 장이 발달되는 곳도 있다. 종로구 동승동 혜화동로터리 동성고교 주변은 일요일 오후가 되면 필리핀 장터가 열리고, 혜화동 성당은 필리핀인들을 위한 미사가 별도로 마련되면서, 주말 나들이 외국인들이 임시 좌판을 벌이고 있다.

다섯째, 외국인 전문 인력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이루진 고급주택 밀집지역이다. 서울 반포 서래마을과 이촌1동 일본인마을은 프랑스학교와 일본인학교를 중심으로 자녀교육을 위해 외국인 회사 임직원, 대사관 직원들이 모여 외국인마을이 발달된 곳이다. 이들 지역에 유럽풍의 고급 음식점과 카페가 입점하면서 도시 내 독특한 이국적인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한류 열풍과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된 밀집지역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이 높아진 것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연구 단지나 대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여살기 시작했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에 따르면 2010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6만8039명에 이른다. 이들 중 4만 여명은 경기, 충청권 등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500명 이상인 지방대만 해도 17곳에 이른다. 특히 지방대 중 외국인 유학생 1위를 차지한 충북 청주대의 경우에는 27개국에서 온 1,420여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대전시 대덕특구 내에 1천여 명의 외국인

교환 연구원 등이 종사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으로 유학보다는 한국어 연수나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현재 2만429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대비 14% 증가한 것이다.

이외에도 특정 국가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시장, 음식점, 식료품점이 형성되어 외국인들이 모여들고 있다. 서울 대학로의 필리핀 시장(매주 일요일 개장), 이슬람 중앙사원 중심의 이슬람거리, 서울 동대문 운동장 주변의 몽골타운과 중앙아시아촌 등이 있다.

2. 외국인밀집지역 기능

외국인밀집지역은 외국인들의 초기정착을 돕는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시간 흐름에 따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외국인밀집지역의 순기능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자국민끼리 정보교환 등을 통해 초기정착에 도움을 받는다. 다시 말해 외국인밀집지역은 외국인들이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향수를 달래주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상부상조 등의 사회적 연계망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문화적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둘째, 외국인밀집지역의 역기능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동료집단간의 자국문화 몰입에 따른 주류사회와의 단절과 문화적 고착화를 심화시켜 사회문화적 고립과 슬럼화 촉진 등의 치안부담을⁴³⁾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체류외국인들의 자국문화 몰

43) 외국인밀집지역 내에서 외국인들은 절도 등 생계형 범죄와 개인적 불화, 채권채무 문제로 인한 폭력과 강력범죄, 실업을 이유로 범죄를 자행하는 역기능도 존재한다.

입은 다인종·다문화가 공존하는 외국인밀집지역에서 인종간의 문화적 갈등을 유발시켜 우리사회 적응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외국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제도적 제한과 차별, 소외감 등을 극복하고자 자국민끼리의 결속력을 통해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비합법적 수단 즉, 사회일탈이나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제3장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 및 외국인밀집지역 실태

제1절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 현황

1. 외국인 입국자 추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출입국자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전년 누계 대비 출입국자 5.7%, 국민출국자 1.7%, 외국인입국자 11.4% 모두 증가하였다.

<표 3-1>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누계, 승무원 포함)

연도	출입국자 합 계	출 국			입 국		
		소계	국 민	외국인	소계	국 민	외국인
'01년	22,643,377	11,345,788	6,379,255	4,966,533	11,297,589	6,269,638	5,027,951
'02년	25,146,563	12,574,712	7,441,059	5,133,653	12,571,851	7,367,181	5,204,670
'03년	23,972,928	12,003,902	7,386,088	4,617,814	11,969,026	7,311,431	4,657,595
'04년	29,609,460	14,820,796	9,139,314	5,681,482	14,788,664	9,038,119	5,750,545
'05년	32,638,035	16,363,758	10,372,409	5,991,349	16,274,277	10,265,750	6,008,527
'06년	35,851,121	17,905,126	11,833,511	6,071,615	17,945,995	11,704,739	6,241,256
'07년	39,833,724	19,854,595	13,620,503	6,234,092	19,979,129	13,553,872	6,425,257
'08년	38,203,620	19,017,545	12,315,221	6,702,324	19,186,075	12,362,263	6,823,812
'09년	35,206,504	17,590,236	9,804,725	7,785,511	17,616,268	9,782,270	7,833,998
'10년 1~12월	42,988,101	21,442,918	12,807,359	8,635,559	21,545,183	12,778,268	8,766,915
'11년 1~12월	45,422,910	22,611,679	13,019,134	9,592,545	22,811,231	13,045,329	9,765,902
증감률	5.7%	5.5%	1.7%	11.1%	5.9%	2.1%	11.4%

*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12월호, 3면.

특히, 세계적인 한류열풍에 따라 국내 관광, 경제성장에 따른 유학, 취업, 국제결혼 목적의 국내입국 외국인들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입국 외국인은 2001년 5,027,951명으로 집계된 이후 2011년 말 현재 9,765,902명으로 10년 사이 5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현재 국적별 국내입국 외국인 증가 현황(승무원 제외)을 보면 일본 37.7%, 중국(한국계 포함) 23.6%, 미국 8.9%, 타이완 5.3%, 홍콩 3.1%, 타이 3.1% 기타 1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대비 일본 8.9%, 중국 18.7%, 미국 0.2%, 타이완 4.5%, 홍콩 23.3%, 타이 19.8% 각각 증가한 것이다. 체류 목적별 입국현황을 보면 승무원(1,099,399명)이 가장 많은데 이어서 관광통과가 7,204,454명, 취업 424,87명, 상용·투자 247,166명, 재외동포 190,212명, 유학·어학 142,240명, 거주(결혼이민) 121,342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국가위상이 높아져 취업과 투자를 비롯한 한류열풍에 의한 관광객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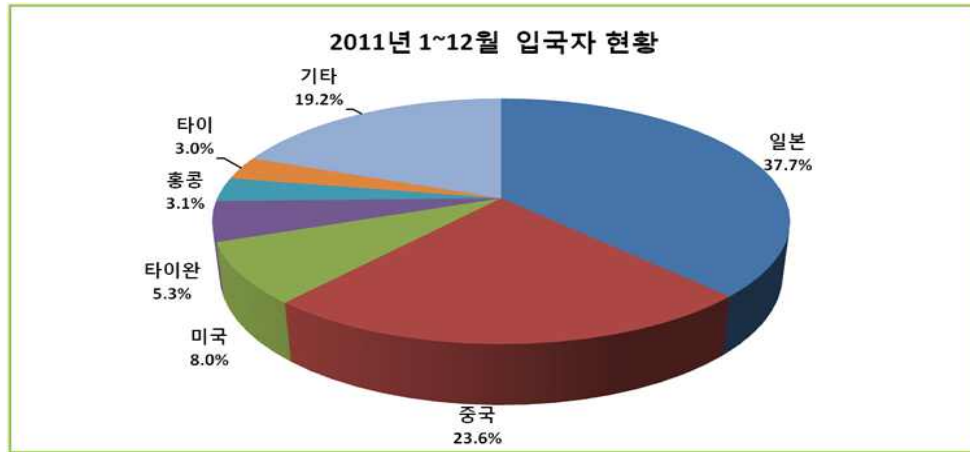
<그림 3-1> 외국인 입국자 추이(누계, 승무원 포함)



*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12월호, 3면.

<그림 3-2> 주요 국가 국민 입국현황(누계, 승무원 제외)

(2011.12.31. 현재, 단위 : 명)



*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12월호, 3면.

<표 3-2> 체류목적별 외국인 입국현황(누계, 승무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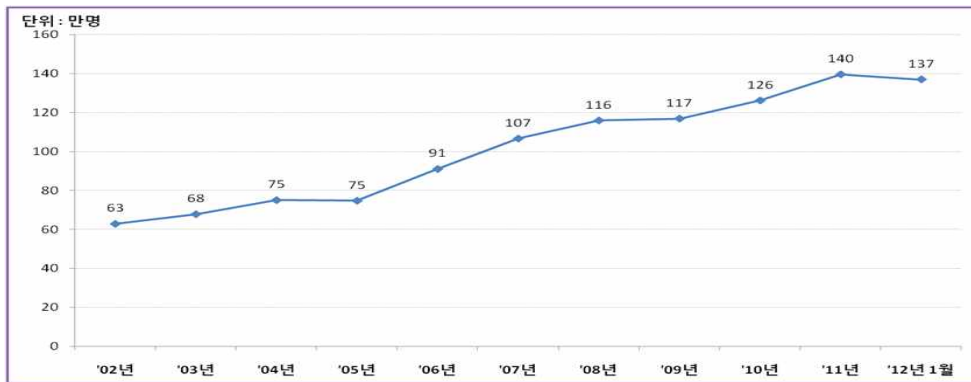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자 격 / 계	6,425,257	6,823,812	7,833,998	8,766,915	9,765,902	111.4%
외 교 · 공 무 44)	108,511	105,412	108,785	114,204	107,839	94.4%
관 광 · 통 과 45)	4,387,416	4,640,758	5,684,180	6,364,819	7,204,454	113.2%
유 학 · 어 학 46)	63,009	81,042	116,111	135,821	142,240	104.7%
문 화 · 연 수 47)	17,928	18,263	7,216	2,355	7,738	328.6%
취 재 48)	1,798	1,679	1,815	2,527	2,033	80.5%
종 교 · 복 지	2,492	2,485	2,254	2,346	2,190	93.4%
상 용 · 투 자 49)	321,513	325,409	282,153	287,318	247,166	86.0%
전 문 인 력 50)	66,981	73,609	81,018	89,871	92,069	102.4%
예 술 흥 행	4,185	4,845	4,577	4,183	3,655	87.4%
기 타 취 업 51)	229,561	376,263	375,381	414,580	424,879	102.5%
동 거 · 동 반 52)	85,620	53,747	54,869	61,054	57,268	93.8%
거 주 53)	109,777	113,643	114,463	122,063	121,342	99.4%
재 외 등 포	62,429	70,030	77,948	129,142	190,212	147.3%
영 주	27,763	28,294	29,257	41,561	58,805	141.5%
승 무 원	934,129	926,295	891,815	992,270	1,099,399	110.8%
기 타	2,145	2,038	2,156	2,801	4,613	164.7%

*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12월호, 4면.

2.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에 국내체류 외국인은⁵⁴⁾ 2001년 566,835,577명으로 집계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2월 31일 현재 총인구대비 2.5%를 차지한 1,395,077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2.5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내체류 외국인은 2010년 대비 10.6% 증가한 것이다.

<그림 3-3>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2년 1월호, 8면.

- 44) 외교·공무 : A-1(외교), A-2(공무), A-3(협정)
- 45) 관광·통과 :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3(단기종합)
- 46) 유학·어학 : D-2(유학), D-4-1(한국어연수)
- 47) 문화·연수 : D-1(문화예술), D-4(일반연수)
- 48) 취 재 : C-1(일시취재), D-5(취재)
- 49) 상용·투자 : C-2(단기상용),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 50) 전문인력 :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7(특정활동)
- 51) 기타취업 : C-4(단기취업),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등
- 52) 동거·동반 : F-1(방문동거), F-3(동반)
- 53) 거 주 : F-2(거주), F-6(결혼이민)
- 54) '외국인'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등록을 한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 및 외국인주민자녀(0~18세)를 말한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등록을 하는 90일 이상 체류자):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 혼인귀화자, 인자·특별귀화 등 기타사유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0~18세): 외국인 부모, 외국인·한국인 부모, 한국인부모를 각각 의미한다.

〈표 3-3〉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추이

(2011.12.31. 현재, 단위 : 명, %)

연 도	총 계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거소신고
2001년	566,835	229,648	322,451	14,736
2002년	629,006	252,457	357,340	19,209
2003년	678,687	437,954	218,426	22,307
2004년	750,873	468,875	259,464	22,534
2005년	747,467	485,144	236,958	25,365
2006년	910,149	631,219	249,542	29,388
2007년	1,066,273	765,746	266,011	34,516
2008년	1,158,866	854,007	263,402	41,457
2009년	1,168,477	870,636	247,590	50,251
'10년 12월	1,261,415	918,917	258,673	83,825
'11년 12월	1,395,077	982,461	277,596	135,020
증감률(%)	10.6	6.9	7.3	61.1
구성비(%)	100	70.4	19.9	9.7

*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12월호, 8면.

제2절 국내 외국인밀집지역 실태

1. 외국인밀집지역 현황

국내체류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분류는 통일되지 않고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경찰청에서 분류한 기준에 따라 35,00명 이상을 외국인 거주지를 밀집지역으로 규정한 후, '가', '나'급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특정지역 내 외국인이 다수 체류하고 있어 외사경찰 활동상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경찰서, 즉 '경찰서별 평균 등록외국인 수(약 3,500명)'와 '국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약 2%)'을 적용한 것이다. 2012년 1월 기준 경찰서별 평균 등록외국인 수는 3,881명이나 연도별 밀집지역 변화추이 파악을 위해 2010년

과 동일한 수치(3,500명)를 적용하였다.

경찰청이 조사한 “2011년 외국인 체류실태 분석결과”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경찰서는 전국 249개서 중 44.2%에 해당되는 총 110개(‘가’급 44개·‘나’급 66개) 경찰서로 2010년 대비 22.2%(2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경찰청별로는 경기청에 가장 많은 31개서에 이어서 서울 24개서, 경남 13개서, 경북 7개서, 인천 6개서, 충남 6개서, 부산 5개서, 울산 4개서, 충북 3개서, 전북 3개서, 전남 3개서, 대구 2개서, 광주 2개서, 대전 1개서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밀집지역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55.5%인 61개 경찰서가 분포되어 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분포하고 있는 것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인 것이다. 또한 2011년 10월 현재 전국 등록외국인 996,676명 중 110개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경찰서 내에 81.5%인 812,30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등록외국인 현황

(2011.10.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전체 등록외국인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996,676	910,221	86,455

<표 3-5> 지방경찰청별 외국인밀집지역 현황

(2011.10.31 현재, 단위 : 경찰서)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1년	110	24	5	2	6	2	1	4	31	3	6	3	3	7	13
'10년	90	22	5	2	5	1	1	2	30	3	4	1	2	4	8
증감	+20	+2	-	-	+1	+1	-	+2	+1	-	+2	+2	+1	+3	+5

* 강원청·제주청은 '10년, '11년 조사시 외국인밀집지역이 없었음.

* 자료: “2011년 외국인 체류실태 분석결과”, 경찰청 외사국, 2012.2.

<표 3-6> 외국인밀집지역 기준

구 분	'가'급 밀집지역	'나'급 밀집지역
기 준	경찰서 내 등록외국인 7,000명 이상 또는 외국인 비율 4% 이상인 지역	경찰서 내 등록외국인 3,500명 이상 또는 외국인 비율 2% 이상인 지역
현황	44개 경찰서	66개 경찰서

* 자료: 경찰청 외사국, 2011.

2. 외국인밀집지역 분류

가. '가'급 외국인밀집지역

2011년 10월말 현재 전국 249개 경찰서 가운데, 경찰서 관할지역 내 외국인 체류 7천명 이상 또는 4%이상 '가'급 외국인밀집지역은 44개 경찰서로 나타났다. 경찰서별로는 경기청이 가장 많은 18개서에 이어서 서울청 15개서, 경남청 3개서, 인천청 2개서, 충북청 2개서, 충남청 2개서, 부산청 1개서, 전남 1개서로 나타났다. '가'급 밀집지역 역시 수도권에 77.3%인 34개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취업이 비교적 쉽고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들이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가'급 외국인밀집지역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확보 방안 등의 지원 대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나'급 외국인밀집지역

2011년 10월말 현재 전국 249개 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 내 체류 외국인 3천5백 명 이상 또는 2% 이상 지역인 '나'급 외국인밀집지역은 66개 경찰서로 파악되었다. 지방경찰서별로는 경기청이 가장 많은

13개서에 이어서 경남청 10개서, 서울청 9개서, 경북청 7개, 부산청 4개서, 인천청 4개서, 울산청 4개서, 충남청 4개서, 전북청 3개서, 전남청 2개서, 광주청 2개서, 대구청 2개서, 대전청 1개서, 충북청 1개서로 나타났다. ‘나’급 외국인밀집지역 역시 수도권지역에 41.0%인 27개 경찰서로 나타났다. 특히, ‘나’급 외국인밀집지역은 수도권을 비롯하여 경남, 경북, 충남, 전남, 전북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있음을 볼 때,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단이나 도농 산업단지의 경우 주거비용이 비교적 저렴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도권보다는 일자리 확보가 비교적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북 청주대학을 비롯한 지방대학들이 대학생 확보 차원에서 비교적 저렴한 학비와 장학금을 기반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 중국 등 아시아권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근 ‘나’급 외국인밀집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볼 때, 외국인밀집지역 치안대책이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적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외국인밀집지역 치안대책에 필요한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4장 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 범죄 및 수사의 한계

제1절 외국인밀집지역 범죄 실태

1.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

2002년 국내체류 외국인 피의자 5,221명을 검거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07~'11)간 내국인 범죄는 매년 평균 2.2%씩 감소한 반면,⁵⁵⁾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자는 평균 17.8% 증가했다. 또한 외국인 범죄 증가율은 체류외국인 증가율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류외국인은 2007년 1,066,273명에서 2011년 1,395,077명으로 328,804명이 증가했으며 매년 전년대비 평균 7%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피의자는 2007년 14,524명에서 2011년 26,915명으로 12,391명 증가하여 매년 전년대비 평균 17.8% 증가율을 보여 체류외국인 증가율 대비 2.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⁶⁾

국내체류 외국인범죄 총 검거건수는 2002년 5,221건 대비 10년이 지난 2011년에는 26,915건을 검거해 415.5% 급증하였다. 2011년 외국인 피의자는 체류외국인 1,395,077명 중 26,915명이 검거되어 2010년 대비 19.4% 증가하였다.

55) 내국인 피의자는 지난 5년간 2,094,850명(2007)에서 1,879,748명(2011)으로 매년 평균 2.2%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6) 내국인 인구는 2007년 49,268,928명에서 2011년 50,734,284명으로 0.75% 증가하였다.

<표 4-1> '02~'11 최종별 외국인 범죄 단속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02년	5,221	47	100	41	599	1,865	568	-	2,001
'03년	6,144	32	137	49	630	2,071	834	-	2,391
'04년	9,103	60	157	52	825	2,424	1,965	218	3,402
'05년	9,042	42	124	62	821	1,919	3,340	152	2,582
'06년	12,657	72	107	68	971	2,483	6,229	73	2,654
'07년	14,524	54	118	176	1,213	3,369	5,685	231	3,678
'08년	20,623	85	133	178	1,343	4,940	7,472	694	5,778
'09년	23,344	103	260	198	2,001	5,322	4,792	778	9,890
'10년	22,543	83	221	255	1,741	5,885	4,487	720	9,151
'11년	26,915	103	157	308	1,766	7,830	3,549	243	12,959
계	150,116	681	1,514	1,387	11,910	38,108	38,921	3,109	54,486
'10년 대비 '11년 증감	▲19.4%	▲24.1%	▽29.0%	▲20.8%	▲1.4%	▲33.1%	▲26.4%	▽66.3%	▲41.6%
'07년 대비 '11년 증감	▲85.3%	▲90.7%	▲33.1%	▲75.0%	▲45.6%	▲132.4%	▽37.6%	▲5.5%	▲252.3%

* 자료: 경찰청 외사국, 2011.

가. 지방청·경찰서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

1) 지방청별 외국범죄 검거 현황

최근 3년('08~'10)간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검거한 외국인 피의자 66,270명 중 서울경찰청은 31.7%인 21,018명으로 연평균 7,006명, 하루 평균 19.2명을 검거하여 서울이 외국인 범죄 최다 발생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기청 31.4%인 20,801명, 인천청 6.5%인 4,317명, 경남청 5.6%인 3,720명 순을 보여 수도권과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75.2%로 나타났다.

2011년 국내체류 등록외국인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64.5%)과 경남(6.6%)에 71.1% 체류하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밀집지

역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볼 때, 외국인밀집지역이 많은 곳일수록 범죄 피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최근 3년간('08~'11.6) 지방청별 외국인범죄 단속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8	2009	2010	합계	연평균	2011. 6월
서울	6284	7739	6995	21018	7006.0	6164
경기	5748	7937	7116	20801	6933.7	4125
인천	1952	1253	1112	4317	1439.0	672
경남	1291	1051	1378	3720	1240.0	838
부산	1062	1178	1108	3348	1116.0	648
대구	655	865	635	2155	718.3	342
경북	655	650	791	2096	698.7	340
충남	482	411	625	1518	506.0	372
충북	337	303	546	1186	395.3	257
울산	338	393	416	1147	382.3	211
전남	309	379	436	1124	374.7	197
전북	408	223	364	995	331.7	185
강원	375	266	314	955	318.3	120
대전	260	294	325	879	293.0	121
광주	258	198	243	699	233.0	93
제주	109	90	113	312	104.0	65
합계	20,523	23,230	22,517	66,270	22,090	14,750

* 자료: 경찰청; 유정현, “외국인범죄 최다지역 서울 일평균 19.2건 발생”, 국정감사보도자료, 2011.9.26(서울, 부산은 2011.7월 기준임).

2) 10대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경찰서 외국범죄 검거 현황

최근 3년간('08~'10) 10대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검거한 외국인 피의자는 14,162명으로 연평균 4,72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6월말 현재 외국인 피의자 검거는 3,162명으로 지난 3년 연평균의 67.0%에 해당되고 있어 외국인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범죄검거 실적이 가장 많았던 경찰서는 서울 구로서로 지난 3

년간('08-'10년)총 2,346명, 경기 안산 단원서 2,212건, 영등포서 2,19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로구서의 경우 2011년 7월을 기준으로 이미 연평균 건수에 육박하는 635건을 검거했다. 이 지역은 지난 3년('08-'10) 평균 782건으로 하루 평균 2.14건이 발생한 곳이다. 2011년의 경우 외국인밀집지역인 서울 용산·구로·영등포, 경기 안산지역의 외국인 피의자는 3,432명으로 전체 외국인 피의자(26,915명)의 12.7%에 달했다.

<표 4-3> 최근 3년간('08~'11.6) 경찰서별 외국인 범죄 단속 현황

(단위: 명)

연번	구 분	2008	2009	2010	합계	연평균	2011. 6
1	서울 구로	765	814	767	2346	782.0	635
2	경기 안산단원	753	790	669	2212	737.3	429
3	서울 영등포	598	838	759	2195	731.7	447
4	서울 금천	483	504	355	1342	447.3	234
5	서울 용산	343	441	535	1319	439.7	305
6	경기 평택	392	461	414	1267	422.3	255
7	경기 수원서부	336	345	244	925	308.3	146
8	서울 광진	255	336	281	872	290.7	200
9	경기 화성서부	191	281	393	865	288.3	291
10	경기 시흥	217	314	288	819	273.0	220
합계		4,333	5,124	4,705	14,162	4,720.6	3,162

* 자료: 유정현, “외국인범죄 최다지역 서울 일평균 19.2건 발생”(지방청을 제외한 경찰서별 통계이며, 서울, 부산만 2011.7월 기준임).

3) 안산단원서 외국인범죄 검거 현황

대표적인 외국인밀집지역을 관할하는 경기 안산단원서의 경우, 지난 5년간('07-'11) 외국인 범죄는 111.5%(455명) 급증하였다. 2011년 말 현재 외국인범죄 검거는 2010년(669명) 대비 29.0% 증가한 863건을 검거했는데, 경기도내 외국인범죄의 10.1%를 차지한 수치이다.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 중 8.1%인 70명을 구속하였다. 기타는 교통 137명, 도박

76명, 음악산업진흥(도우미) 58명 등으로 나타났다.

나. 외국인 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

1) 최종별 외국인범죄 검거 현황

앞의 <표 4-1>에서와 같이 지난 5년간 국내체류 외국인 피의자 검거 현황을 보면, 2007년 대비 2011년의 경우 평균 85.3% 증가하였다. 최종별로는 폭력이 가장 많은 132.4%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살인 90.7%, 강간 75.0%, 절도 45.6%, 강도 33.1%, 마약류 5.5% 순으로 증가한 반면, 마약류는 37.6% 감소하였다.

특히, 살인, 강도, 절도, 지능범, 마약사범 등의 경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 2010년 경찰의 국제성 범죄 기획수사와 외국인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범죄대책 실무협의회’, 외사조정관 제도를 통한 외국인 관련 범죄첩보 수집 등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한 결과 2010년은 일시적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강간과 폭력사범은 여전히 증가하였다.

2011년의 경우,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사범 검거는 전년 대비 19.4% 증가하였는데, 강도, 지능범, 마약류는 전년과 같이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살인(31.0%), 강간(119.1%), 절도(1.3%), 폭력(40.1%) 등 5대 범죄는 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외국인 범죄의 유형 및 국적의 다양화와 더불어 범죄양상 역시 더 지능화 흉포화 되어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국내체류 외국인 강력범죄와 관련한 맞춤형 치안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 것이다.

2) 국적별·유형별 범죄 현황

최근 5년간('07~'11)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범죄검거 현황을 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범죄 107,949명 중 58.7%인 63,401명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인 7.7%, 미국인 5.8%, 태국인 4.4%, 필리핀인 1.9%, 러시아인과 파키스탄인 각각 1.1%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는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저소득 국적의 체류외국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의 범죄가 많은 것은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⁵⁷⁾ 사범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 할수록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여 치안수요를 증가시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 4-4> '07~'11 국적별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명)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베트남	기타
'07년	14,524	8,421	836	140	199	258	470	180	571	3,449
'08년	20,623	13,448	871	117	227	265	1,060	296	810	3,529
'09년	23,344	13,427	1,208	143	255	563	1,188	293	2,120	4,147
'10년	22,543	12,428	1,509	106	258	426	1,099	212	2,324	4,181
'11년	26,915	15,677	1,788	130	227	535	944	246	2,438	4,930
계 (%)	107,949 100%	63,401 58.8%	6,212 57.6%	636 0.6%	1,166 1.1%	2,047 1.9%	4,761 4.4%	1,227 1.1%	8,263 7.7%	20,236 18.8%

* 자료: 경찰청 외사국.

2011년 8월 현재 국적별 외국인범죄는 중국인은 지능범, 폭력, 절도, 강도, 강간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우즈베키스탄인과 태국인은 폭력, 베트남인은 지능범과 폭력, 몽골은 폭력과 절도범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국적별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57)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약칭 '한·미 SOFA'로 부르는데, 원래 한미행정이라 불렀지만 국회의 정식비준을 거치지 않는 약식조약이라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에 잘 사용하지 않고, 대신 '한·미 SOFA' 또는 '주한미군인 지위협정'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표 4-5> 국내체류 외국인 국적별 범죄유형

('11년 8월 현재, 단위 : 명)

국적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조치	
											구속	불구속
계		1,093	11	27	14	119	191	174	11	546	142	951
중 국		466	5	8	2	38	79	118	1	215	87	379
우즈벡		75			3	14	18	5		35	3	72
베트남		129	2	8	1	19	17	25	4	53	18	111
러시아		9				2		1		6		9
태 국		108	1		1	4	12	3	4	83	5	103
방글라데시		18					7	4		7	2	16
몽 골		152	2	9	4	24	38	7		68	17	135
필리핀		37	1	1		3	5	2	1	24	1	36
카자흐스탄		9		1		2	1	2		3	1	8
기 타		90			3	13	14	7	1	52	8	82

* 자료: 경찰청 외사국

3) SOFA 범죄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범죄가 2008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07-'11) SOFA 범죄자 총 2,186명 중 미군에 의한 범죄가 73.7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군속에 의한 범죄는 2009년 증가한 이후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⁵⁸⁾

<표 4-6> SOFA사건 현황

(단위 : 명)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총계
계	409	375	455	491	456	2,186
미 군	283	261	325	380	341	1,590
군속 등	126	114	130	111	115	596

* 자료: 경찰청 외사국

58) 2011년 경기도 SOFA 범죄 260명 중 미군에 의한 범죄 73.1%, 미군속 12.7%, 초청계약자 11.2%, 미군가족 3.1% 순으로 나타났다(경기청 외사과, 2011).

4) 마약류 사범

2000년 이후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정책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로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자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이 대폭 증가하자, 정부당국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여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8년도의 경우 국내 전체 마약류사범은 전년(1만649명) 대비 7.1%(9,898명)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오히려 전년(298명) 대비 3.1배(928명) 증가하였다. 이렇게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또 다시 급증하게 되자, 사범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결과 전년대비 2009년 4.1%, 2010년 3.6% 각각 감소하였다.⁵⁹⁾ 2011년의 경우 전년대비 66.3% 감소한 243건을 검거하였다.

2010년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최종은 대마사범이 49.5%(425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향정신사범 45.5%(390명), 마약범죄 5.0%(43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외국인 마약 사범은 총 31개국으로, 2009년 28개국에 비해 3개 나라가 늘었다. 이 가운데 태국인이 48.8%(419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스리랑카(124명), 미국(96명), 중국(52명), 러시아(51명), 가나(25명)가 뒤를 이었다. 마약류 범죄자 국적의 다양화는 전국에 걸친 공단 근로자들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 엑스터시, 케타민 등 신종 마약류 밀반입 양(1,109정)은 2009년에 비해 11.3% 늘었다. 범죄유형별로는 2003년도까지 밀수, 밀매, 사용사범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04년부터 사용사범이 급증하여 2009년 89.3%를 정점으로 2010년에도 82.1%를 차지하고 있다.⁶⁰⁾ 즉, 2010년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감소했으나 밀반입되는 마약 종류와 마약 사범의 국적은 다양화되었다.

59) 대검찰청, 2010 마약류범죄백서, 도서출판성민, 2011.6, 139면.

60) 위의 백서, 144면.

이와 같이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은 감소했으나 밀반입되는 마약 종류나 적발된 마약 사범의 국적은 다양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마약류 사범 단속 강화로 마약류 사범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나, 국제교류가 빈번해지고 출입국이 용이해져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사범의 국적 다변화와 함께 신종마약류와 마약사용자들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4-7> 외국인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연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검거건수	152 ▽30.3%	73 ▽52.0%	231 ▲216.4%	694 ▲200.4%	778 ▲12.1%	720 ▽7.5%	243 ▽66.3%

* 자료: 경찰청 외사국

5) 전화금융사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을 초월한 금융거래가 실시간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국제금융 사기조직들 역시 더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2006년 6월 처음 발생한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는 점점 그 수법이 지능화·정교화·조직화·다양화되는 수법으로 발전되고 있다. 초기의 전화금융사기가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정보를 노렸다면, 점차 진화되어 국내체류 외국인과 연계하여 피해자에게 우체국을 비롯한 금융기관·수사기관·공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부녀자 납치협박 등을 통해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범기관 사칭 및 카드론 사기 수법, 국제전화 수신표시가 되지 않는 인터넷전화 사용, 발신번호를 국내 공공기관 등의 번호로 조작, 피해자의 가족관계와 이름은 물론 집과 휴대전화번호를 사전에 파악해 이용하거나 사칭기관의 실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구체적이고 정교화된 새로운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⁶¹⁾ 특히, 중국·대만의 범죄조직이 국내체류 외국인과 연계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갈수록

진화해 경찰과 검찰, 청와대 등을 사칭하고 가짜 홈페이지를 동원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총책이 개설한 차명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대만의 범죄조직이 파견한 국내총책은 통장모집책, 현금인출책, 송금액을 두고 있다. 2009년 5월 중국내 전화금융사기단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교육을 받고 입국한 대만인은 대포통장을 구입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되었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말까지 전국 각지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했으니 몸값을 보내라’고 속여 120여 명으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총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외국인 등 5명이 구속된 바 있다.

다. 불법체류자 범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07년 223,464명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2월말 현재 불법체류자는 167,780명으로 전체 체류자(1,395,077명)의 12.02%를 차지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0.43%가 감소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2007년 3월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방문취업제 도입과 2008년 “불법체류외국인 감소 5개년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활동, 2010년(5.6~8.31) 4개월에 걸친 “출국지원 프로그램”과 하반기 지문 및 안면인식시스템 도입에 따른 공항만 입국심사 강화 등 불법체류자 감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국내체류 외국인 합법화 정책추진으로 불법체류자 감소는 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율은

61) 국민권익위원회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201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상담전화 분석 결과 전화금융사기 사칭 유형으로는 은행 사칭 30.3%, 자녀납치 21.1%, 검찰청 사칭 13.5%이며 우체국과 택배 사칭은 2009년 이후 크게 감소되었다

지난 6년(2006-2011)간 평균 1.22%로 체류외국인 전체 평균범죄율 1.73%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시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은 0.92%로 전체 외국인 범죄율 1.93%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이 낮은 것은 매년 상·하반기(연 2회)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에 경찰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밀매 등 불법입국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로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표 4-8> 불법체류자 연도별 범죄율

단위 : 명

유형별	연도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체류외국인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6,960,257
외국인 피의자		12,657	14,524	20,623	23,344	22,543	26,915	120,606
범죄율(%)		1.39%	1.36%	1.78%	2%	1.78%	1.93%	1.73%
불법체류 외국인		211,988	223,464	200,489	177,965	168,515	167,780	1,150,201
불법체류 피의자		3,475	1,961	2,622	2,590	1,907	1,537	14,092
범죄율		1.64%	0.88%	1.3%	1.46%	1.13%	0.92%	1.22%

* 자료: 경찰청 외사국

지난 6년간(2006-2011) 불법체류 외국인의 죄종별 검거현황을 보면, 지능범이 가장 많은 36.62%를 차지한 가운데, 절도, 폭력, 마약류, 강도, 강간, 살인 범죄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청의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단속 590명 중 중국 32.7%(193명), 태국 14.4%(85명), 베트남 13.7%(81명), 몽골 12.7%(75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이들 거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합동단속 필요하다.⁶²⁾

그러나 불법체류자들은 신분의 취약성을 은폐하고자 매우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시 신원확인이나 소재 파악, 사건해결 등에는 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

62) 경기청 외사과, 2011.

들의 경우 신분상의 취약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내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범죄피해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국내 악덕업주가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외국인 자생폭력배’에 의해 금품갈취·성폭행 등의 피해를 당해도 대부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의 피해범죄가 노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권위조나 문서위조로 불법취업을 하는 등의 생활형 범죄는 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4-9> 불법체류 외국인 최종별 검거현황

단위 : 명

연도 \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06년	3,475	33	38	31	322	311	2,202	9	529
'07년	1,961	16	44	32	324	322	523	92	608
'08년	2,622	22	41	40	382	326	1,093	109	609
'09년	2,590	34	82	24	473	321	716	101	839
'10년	1,907	16	58	31	236	302	383	94	787
'11년	1,537	14	32	20	178	276	244	12	761
계(%)	14,092	135	295	178	1,915	1,858	5,161	417	4,133
	100%)	0.96%	2.09%	1.26%	13.59%	13.18%	36.62%	2.96%	29.33%

* 자료: 경찰청 외사국

라. 체류외국인의 내국인 대상 범죄

경남경찰청 외사과가 2011년 12월 중순부터 금년 1월 중순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키스)을 통해 취합한 외국인 범죄 결과, 2011년 경상남도 내 외국인 범죄 검거 인원은 1,691명으로 이중 390명이 내국인 대상 범행 피의자로 확인되었다.⁶³⁾ 즉, 전체 외국인 범죄 검거 인원 중 외국인이 피의자이고, 내국인이 피해자인 비율은 23.1%였다. 반면, 외국인이

63) 2011년 도내 외국인 범죄 발생 건수는 955건, 검거건수는 819건으로 검거율은 85.8%로 확인되었다.

외국인에게 범한 범죄(외국인 피의자 : 외국인 피해자) 범죄는 76.9%로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범한 범죄 비율보다 3배를 넘었다. 특히, 외국인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대부분은 자국민간에 범한 범죄로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외 외국인 범죄는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60% 이상이었다.

<표 4-10> 2011년 경상남도 체류외국인의 내국인 대상 피의자 검거현황

구분	계	강력범				폭력범	절도범	자능범	기타
		강도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인원(명)	390	1	4	1	7	147	116	46	75
비율	23.1%	0.06%	0.71%			8.69%	6.86%	2.72%	4.03%
		0.77%							

* 비율은 도내 전체 외국인 검거 피의자 1,691명에 대한 비율

* 자료: 경남도민일보, 2012.1.13.

도내체류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390명 중 5대 범죄(살인·강도·성폭행·절도·폭력)를 범한 외국인은 70.7%인 27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전체 외국인 피의자 1,691명 중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5대 범죄는 16.3%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특히,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피의자 390명 중 폭력·절도를 제외한 살인·강도·성폭행(강간·강간미수·성추행 포함) 등 죄질이 아주 나쁜 강력범죄 외국인 피의자는 13명으로 0.77%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 대상 살인 혹은 살인미수는 한 건도 없었다.

2011년 경남도내 내국인 범죄 중 전체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살인(0.08%)·강도(0.2%)·성폭행(0.7%, 강제추행 포함) 등 강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 비율은 0.98%로 외국인 강력범죄 0.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⁶⁴⁾ 그러나 외국인의 내국인 대상 강력 범죄 비율이 내국인 피의자 범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라 하지만, 최근 국내체류 외국인에 의한 내국인 대상 살인 등 강력범죄가 전국적으로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범죄예방 차원의 강력한 치안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범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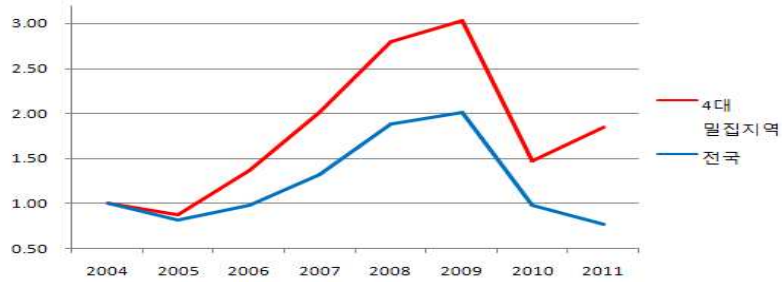
가. 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범죄 발생 지수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대표적 4대 밀집지역인 용산·구로·영등포·안산단원 관할 경찰서 내에 4대(살인, 강도, 강간 폭력) 외국인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경찰청 외사국이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을 기준으로 파악한 “외국인 범죄지수 분석 결과”에⁶⁵⁾ 따르면 국내체류외국인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평균 대략 80,526명씩 증가하였다. 즉, 2004년 대비 2011년 현재 86.6% 증가한 반면, 외국인범죄는 2004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2009년도의 경우 전국 외국인범죄발생 건수 및 비중이 최고조에 이르러 2004년 대비 약 2배 수준이고, 특히, 4대 밀집지역은 3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2009년 외국인 범죄발생 지수는 전국 2.02, 외국인밀집지역은 3.03으로 나타났고, 범죄 발생 비중 역시 전국 1.82, 외국인밀집지역 3.07로 나타났다.

64) 이시우, “외국인 범죄 유형 두껍 열어보니...”, 경남도민일보, 2012.1.13.

65) 외국인범죄 지수 종류 및 산식은 다음과 같다. (1)외국인범죄발생 지수 = 해당년도 외국인 강·폭력범죄 발생건수 / 04년도 외국인 강·폭력범죄 발생건수 (2)외국인범죄비중 지수 = 해당년도 외국인 강·폭력범죄 상대적 발생빈도 / 04년도 외국인 강·폭력범죄 상대적 발생빈도 (3)인구 10만 명당 발생 지수 = 당해연도 강·폭력범죄 발생건수 / 당해연도 인구 × 100,000 이상과 같은 산식에 따라 나온 값을 04년도를 기준 값 1로 보고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였다

<그림 4-1> 전국 / 4대 밀집지역간 외국인범죄발생 변화 추이 비교



* 자료: 경찰청 외사국, “외국인 범죄지수 분석 결과보고”, 2011.

<그림 4-2> 전국 / 밀집지역간 외국인범죄발생 비중 변화 추이 비교



* 자료: 경찰청 외사국, “외국인 범죄지수 분석 결과 보고”,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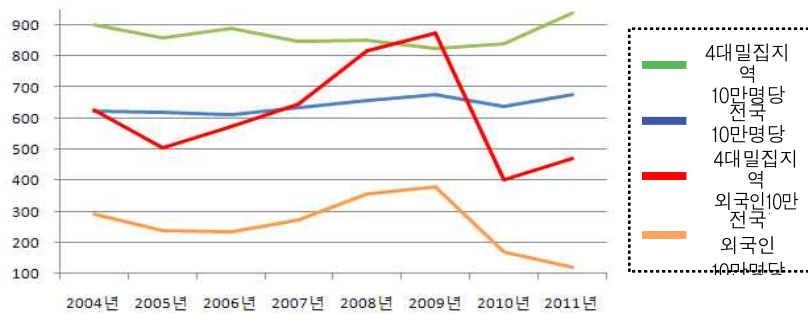
2011년의 경우, 전국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 676건 대비 외국인 10만 명당 외국인 범죄는 120건으로 18% 수준이며, 4대 외국인밀집지역 인구 10만 명당 범죄는 941건 대비 외국인 10만 명당 외국인 범죄는 471건으로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범죄 발생지수는 1.85로 2004년 대비 85% 증가하였고, 외국인범죄 비중지수는 1.62로 2004년 대비 62% 증가하였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국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치안시스템 정비로 2004년 대비 2011년도의 경우 강·폭력 외국인범죄 발생은 76.5%이며, 전체 범죄발생과 비교한 외국인범죄 비중

은 68%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국인밀집지역 치안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지속적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4-3> 전국·밀집지역 10만 명당 외국인범죄발생 추이 비교

* 지수 산정 기준: 당해연도 강·폭력범죄 발생건수/당해연도 인구×100,000



* 자료: 경찰청 외사국, “외국인 범죄지수 분석 결과 보고”, 2011.

나. 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 범죄의 특징

1) 외국인 범죄의 집중화

국내체류 외국인범죄는 2007년(14,524건) 대비 2011년 85.3% 증가한 26,915건이었으나, 4대 밀집지역(이태원·구로·안산 원곡동) 외국인범죄는 2007년 대비 2011년의 경우 118.7%로 대폭 증가하였다. 4대 밀집지역에서 외국인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밀집지역이 외국인범죄 다발지역과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인구대비 범죄자 비율을 보면 아직까지 외국인이 내국인의 1/2 수준이며 강·폭력 범죄율 역시 내국인의 7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있다. 그러나 서울의 대표적인 외국인밀집지역 중 하나인 구로경찰서 관할 지구대 관계자와 인터뷰를 한 결과 외국인에 의한 폭행 등으로 출동하는 건수가 하루 15건이 넘으며, 많을 때는 하루 50건까지 출동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과거 3년간 집단성 폭력행사 전력이 있거나 강

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강제추방 되지 않은 외국인 84명 중 50명이 4대 외국인밀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형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⁶⁶⁾

<표 4-11> 주요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범죄 증감 현황

(단위 : 명)

단위	체류 외국인수(명)		총 외국인 피의자 수(명)	
	전 국	주요 밀집	전 국	주요 밀집
'07년	1,066,273	80,809	14,524	1,569
'10년				2,730
'11년	1,395,077	118,411	26,915	3,432
대비 (증감율)	328,804(30.8%)	37,602(46.5%)	12,391(85.3%)	1,863 07 대비 118.7% 증가 10 대비 25.7% 증가

<표 4-12> 2011년 내·외국인 범죄율(피의자 비율) 비교

(단위 : 명)

구 분	내 국 인	외 국 인
인 구	50,734,284	1,395,077
전체범죄(인구대비 피의자율)	1,879,748(3.70%)	26,915(1.93%)
강폭력범죄(인구대비 피의자율)	413,047(0.81%)	8,398(0.60%)

* 자료: 경찰청 외사국, 2011.

2) 외국인 범죄의 강력화·흉포화

가) 5대 범죄 증가

최근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범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국내 체류외국인은 1,066,273명에서 2011년 1,395,077명으로 30.8% 증가(328,804명)하였으나, 외국인 피의자는 2007년 14,524명에서 2011년 26,915명으로 85.3% 증가(12,391명)한 것으로

66) “수도권 4대 외국인밀집지역, 전체 외국인 피의자 12.7%”, 파이낸셜뉴스, 2012.2.12; 구로경찰서 외사경찰 담당자와 2012년 4월 3일 전화인터뷰 결과.

나타났다. 즉, 국내체류 외국인 피의자 수는 외국인 인구 증가율 대비 2.8배 빨리 증가하였다.

2007년 내국인 총 범죄 중 강·폭력 비율은 22.3%에서 2011년 22.0%으로 안정적 하향추세를 보인 반면, 외국인 총 범죄 중 강·폭력 비율은 2007년 25.6%에서 2011년 31.2%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1년 12월 말 현재 체류외국인 1,395,000여명 중 외국인 피의자는 26,915명으로 2010년에 비해 19.3% 증가한 반면, 2011년 외국인 범죄 중 살인·강도·강간·폭력·마약 등 5대 강·폭력 범죄 피의자는 32.1%인 8,641명으로 집계되었다.⁶⁷⁾ 이중 강·폭력 피의자 중 7,335명(84.9%)가 남성이고 20~30대가 62%로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표 4-13> 국내체류 외국인 5대 범죄

연도	구분	계(명)	5대 범죄					절도	지능범	기타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마약류			
'07년		14,524	54	118	176	3,369	231	1,213	5,685	3,678
'08년		20,623	85	133	178	4,940	694	1,343	7,472	5,778
'09년		23,344	103	260	198	5,322	778	2,001	4,792	9,890
'10년		22,543	83	221	255	5,885	720	1,741	4,487	9,151
'11년		26,915	103	157	308	7,830	243	1,766	3,549	12,959
			계 8,641(32.1%)							

* 자료: 경찰청 외사국.

2011년 강·폭력 피의자 흉기 등 사용률을 보면 내국인은 19.6%인데 비해 외국인은 28.4%로 나타났고, 살인의 경우 100%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중국인에 의한 토막 살인사건과 2012년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조선족에 의한 여성 토막 살인사건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같이 최근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 범죄에 비해 점점 강력화, 흉포화 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과 외국인 혐오증을 가중시키고 있다.

67) 1996년의 경우 국내 체류외국인 범죄는 살인 12명, 강도 64건, 강간 14건이었다.

나) 4대(용산·구로·영등포·안산단원) 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범죄

2011년 외국인 범죄는 26,915명으로 2010년(22,543명)에 대비 19.3% 늘어난 반면, 4대(용산·구로·영등포·안산단원)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 피의자는 2010년 2,730명에서 2011년 3,432명으로 25.7% 급증하였다. 이는 2011년 전체 외국인 피의자의 12.7%를 차지한 수치이다.⁶⁸⁾ 특히 칼 쇠파이프 등을 사용한 외국인 폭력행위 처벌자(3,704명) 중 4대 외국인밀집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22.4%(830명)였으며, 살인의 경우 100% 흉기를 쓴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 범죄에 비해 강력화·흉포화 되고 있다.

지난 8년간('04-'11)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등 강력범죄는 총 37,348건으로, 이중 대표적 4대 외국인밀집지역에서 11.6%인 4,338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4대 외국인밀집지역이 외국인 강력범죄 다발지역과 상관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치안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표 4-14> '04-'11년 외국인 전체 및 4대(용산·구로·영등포·안산단원) 밀집지역 강력범죄

(단위 : 건수)

구 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전체	4대	전체	4대	전체	4대	전체	4대	전체	4대
'04년	2,693	301	60	5	157	12	52	12	2,424	272
'05년	2,147	264	42	4	124	8	62	18	1,919	234
'06년	2,730	412	72	6	107	10	68	9	2,483	387
'07년	3,717	606	54	9	118	10	176	17	3,369	570
'08년	5,336	842	85	18	133	11	178	25	4,940	788
'09년	5,883	913	103	19	260	28	198	29	5,322	837
'10년	6,444	442	83	11	221	11	255	18	5,885	402
'11년	8,398	558	103	5	157	3	308	20	7,830	530
계	37,348	4,338	602	77	1,277	93	1,297	148	34,172	4,020
전체대비 4대 밀집지역 범죄율	11.6%		12.8%		7.3%		11.4%		11.8%	

* 자료: 경찰청 외사국.

68) 경찰청 외사국 자료, 2011.

3) 자생적 조직폭력배 범죄

최근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박, 마약 등과 관련된 외국인 폭력배의 활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교류 증가에 따라 일본 야쿠자·중국 흑사회 등 해외 범죄조직이 대부업·건설업·부동산업 등 합법을 가장하여 국내에 진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외국인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범죄는 과거 개인적 문제의 범죄에서 탈피하여 점차 조직결성의 단계로 진화되고 있다.

조직범죄와 사회와 관련하여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견해에 따르면, 범죄조직은 전형적인 ‘약탈자 단계’에서 시작하여 ‘기생단계’를 거쳐 ‘공생자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거친다.⁶⁹⁾ 조직범죄 초기에 해당하는 약탈자(Predator) 단계는 약탈자로서 강도·절도·폭력·갈취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수입을 얻게 된다.⁷⁰⁾ 기생자(Parasite) 단계의 조직범죄는 약탈자 단계와는 달리 폭력행사를 지양하고 고리대금업과 같이 직접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나 직접운영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불법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다. 특히, 고리대금업·도박·마약류밀거래 등에 의한 비폭력적인 사업이 주된 수입원이 되는데, 합법적인 활동과 불법적인 활동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된다. 조직범죄가 공생자(Symbiont) 단계에 이르면 재능이 뛰어난 조직들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보이거나 최소한 용인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변모하여, 약탈자 단계에서의 외부로 향한 폭력이나, 기생자 단계에서 불법적 재화와 용역의 제공을 떠나 합법적인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업적 시장에서 일반 사업가들과 경쟁하게 된다. 이러한

69) Steir, Edwin H. and Richards, Peter R., Strategic Decision Making in Organized Crime Control, Major Issues in Organized Crime Control.,H. Edelhertz Eds. p.65~72.

70) 송재양, “미국의 조직범죄와 그 법률적 규제 : RICO법을 중심으로”(http://www.lrti.go.kr/자료실-검사 연구-74), 9면.

진화론적 조직범죄 발전단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밀집지역의 조직범죄는 강도·절도·폭력·갈취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약탈자 단계를 거쳐 고리대금업과 도박장 영업권 분양 등 불법 용역과 재화를 제공하는 기생자적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⁷¹⁾

경찰은 2011년 4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3개월간 수사·외사합동 외국인범죄 집중단속 결과 강·폭력범 등 총 8,311명을 검거하였다.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26.7% 증가하였으며 5대 범죄도 검거인원이 23.1% 증가하였다. 특히, 조직(성)폭력배 단속을 위해 폭력·도박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인원이 폭력은 31.6%, 도박은 442.1% 대폭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체류 외국인 수에 비례하여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4-15> 외국인범죄 단속결과(2011.4.5.~7.4)

기 간	총범죄	5대 범죄						도 박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1.4.5. ~ 7.4.	8,311 (341)	2,698	27	62	88	470	2,051	1,545
'10.4.5. ~ 7.4.	6,560 (278)	2,192	37	60	45	491	1,559	285
전년대비 (%)	+26.7 (+22.7)	+23.1	-27.0	+3.3	+95.6	-4.3	+31.6	+442.1

<표 4-16> 체류 외국인 수 및 국적별 피의자 비율(2011.4.5.~7.4)

구 분	중 국	미 국	베트남	태 국	몽 골	우즈베키스탄	대 만
체류 외국인	674,269	135,148	111,909	41,281	30,520	28,835	25,787
피 의 자	3,681	260	478	139	266	99	145

* 자료: 경찰청 외사국, 2011.

이외에도 경찰은 2010년 외국인 주요 강·폭력 사범 64명을 검거(구속

71) 김원희, “한국내 외국인 조직범죄와 경찰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10.2, 51-54면 재정리.

35명)하였으며, 이는 2009년 보다 6.7%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국적별로는 베트남인이 전체 59.0%(79명)를 차지하는 등 모두 아시아계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81명), 부산·경남·경북권이 32.0%(43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과거 외국인범죄가 환치기를 통한 해외송금, 여권이나 비자 등 사문서 위조 등의 개인적 범죄였다면, 최근에는 일부 동일지역 민족 출신끼리 결집하여 자국민 운영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거나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자금을 대부한 후 채권추심 목적으로 갈취하는 형태로 발달하고 있다. 즉, 외국인밀집지역 범죄조직들은 주로 자국출신 체류자들을 상대로 사채놀이, 마약판매, 각종 금품갈취 등 전형적인 조직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이외 보복 우려 및 신분상 약점으로 인해 피해신고를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갈취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⁷²⁾

<표 4-17> 외국인 국적별 강·폭력사범 검거현황

(단위 : 명)

연도 \ 국적	계	베트남	태국	중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08	10	10	0	0	0	0
'09	60	41	0	13	0	
'10	64	28	17	3	12	4

※ 외국인 강·폭력 사건(강도상해·폭행 등) 중 5인 이상 검거, 2인 이상 구속 기준

* 자료: 2011 경찰백서, 331면.

2009년 10월 7일 서울신문은 탐사보도를 통해 외국인 범죄조직이 중국 ‘옌벤 흑사파’ 등 14개국 65개 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이중 6개국 15개 파만이 실제하며 이나마도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하였다. 2001년~2004년까지 외국인조직범죄는 베트남 ‘하노이파’ 등 총 8건으로 65명이 구속되

72) 경찰청, 2011 경찰백서, 330-331면.

고 21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가운데 피해액수가 가장 큰 사건은 2004년 3월 검거된 ‘로만과’ 사건인데,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불법체류자들이 2003년 8월 천안에 ‘로만과’를 결성한 후, 천안 일대 자국민체류자들을 상대로 총 68회에 걸쳐 7,500만원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⁷³⁾

최근에는 외국인에 의한 아편,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과 위조달러 반입, 총기밀매 등은 국제적인 밀수조직이나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마피아, 중국 삼합회, 일본 야쿠자 등은 주변국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침투를 기도하고 있다.⁷⁴⁾

<표 4-18> 외국인 폭력조직(14개국 65개파) 실태⁷⁵⁾

국가	조직수 (65개파)	명칭 (경찰 확인 15개파)	존재여부	내용
중국	25	옌벤 흑사파	○	07.4월 가리봉동 유흥업소 금품갈취(와해추정)
		헤이룽장파	○	09.5월 대림동, 도박자금 빌려준 후 협박, 갈취(와해추정)
		뱀파이어파	×	국내활동사례 없으며, 실체여부확인 안됨
		교화파	×	
		지린파	×	
		호박파	×	
		소지파	×	
		상하이파	×	
		옌지 광주황사장파	×	
		무장파	×	
		옌지 강동학파	×	
		하얼빈파	×	
		오상파	×	
		선양 보석파	×	
		선양 옌지파	×	

73) 박기륜, “외국인신원확인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14호, 2007, 173면; 정광현, “외국인범죄 치안대책 연구-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70면 재인용.

74) 경찰청, 2005 경찰백서, 2005, 332면.

75) 경찰청 외사국 자료; 서울신문 탐사보도, “외국인 조폭 14국 65개파 활개”, 2009.10.7.

		한족 (6)	푸순파	×	국내에서 활동사례 없으며, 실체여부확인 안됨
			저장성 흑사파	×	
			장시성 흑사파	×	
			푸젠성 삼진회	×	
			푸젠성 사두	×	
			산둥성 웨이하이 광명파	×	
		삼합회 (3)	허베이성 베이징 경덕파	×	국내활동사례 없으며, 실체여부확인 안됨
			중년방파	×	
			신이안파	×	
러시아	11	소비에트파	○	04.10.14 평택·천안, 취업알선 소개비 갈취·폭력	
		야쿠트파	○	03.4월 부산 영도, '야쿠트파' 두목이 '페트락파' 조직원에 의해 권총으로 살해, 국내에서의 조직 활동과는 무관(피의자는 인터폴 적색수배중, 자국에서도 와해 추정)	
		페트락파	○		
		레닌콜로즈파	○	'킹크랩 수출회사명'으로 폭력조직과 무관	
		마가파	×	국내에서 활동사례 없으며, 실체여부확인 안됨	
		알렉세이파	×		
		야차파	×		
		곰돌이푸파	×		
		레베단파	×		
		안치크파	×		
그랩파	×				
일본	6	사카우메구미	○	오사카의 '사카우메구미'가 부산 '칠성파'와 오랜 교류가 있으나, 한국 폭력조직과의 접촉은 없으며, 대다수 야쿠자 조직원들은 현지 처(妻) 접촉,카지노 및 골프장 이용 등 단순관광목적으로 방한(국내 활동사례 발견 안됨) ※ 日경찰청에서는 '지정폭력단 제도'를 통해 폭력조직원 신상 파악 및 방한시 주한 일본대사관에 입국사실 통보	
		야마구치구미	×		
		쓰바카이	×		
		스미요시카이	×		
		이나가와카이	×		
		아이스코데스카이	×		
베트	5	하노이파	○	09.6월 경기 수서,자국여성 납치(수서서 강력)	

남				09.8월 자국민 불법체류자 등에게 폭력(경찰청)
		응애안파	○	09.6월 경기 광주, 자국민 상대 도박장개장 채권추심, 갈취
		하이세우파	○	09.7월 경남 김해, 도박장 운영, 자국민 납치감금
		호치민파	×	국내에서 활동사례 없으며, 실체여부확인 안됨
		스트리트갱	×	
필리핀	2	일롱고파	○	폭력과 무관한 단체, 현재는 소멸된 상태
		가디언스파	○	폭력과 무관한 단체로 범죄 및 피해사례는 없음
태국	4	반타이파	○	07.11월 태국복권(로또),사행행위,불법취업 등 입건
		딸라타이파	○	09.3월 자국민 운영 술집에서 보호비명목 갈취
		싸만코차호타이파	×	국내에서 활동사례 없으며, 실체여부확인 안됨
		차이파	×	
방글라데시	4	수원군다	×	공관에서도 자국민 폭력조직의 실체 파악을 위해 여러 경로로 확인 시도했으나 실체파악 불가
		안산군다	×	
		우슈파	×	
		KHAN파	×	
우즈벡	1	로만파	○	04.3.16경기 평택,자국민을 상대 금품갈취(현재 특이없음)
카자흐스탄	1	코리아 마피아	×	국내에서 활동사례 없으며, 실체여부확인 안됨
나이지리아	1	이태원파	×	국내에서 활동사례 없으며, 실체여부확인 안됨
파키스탄	2	주비파	×	국내에서 활동사례 없으며, 실체여부확인 안됨
		비키파	×	
미국	1	LGKK단	×	04년 美LA.멕시코에서 생산된 마약을 국내 밀반입
몽골	1	명칭 不明	×	국내에서 활동사례 없으며, 실체여부확인 안됨
인도네시아	1	명칭 不明	×	국내에서 활동사례 없으며, 실체여부확인 안됨

제2절 외국인 범죄수사의 한계

1.外事경찰 조직 현황

가. 경찰청外事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2항은外事국에外事기획과·外事정보과·外事수사과 등 3개과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청外事국, 지방경찰청外事과(계), 경찰서外事계(반)을 두고, 외국인 신원파악과 범죄 등 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변화하는 국내외外事치안환경에 대응하고자 2006년 3월外事관리관을外事국으로 승격하여 외국국장을 치안감으로 격상하고, 3개과(外事기획과,外事정보과,外事수사과) 7개계로 확대 개편하였다.⁷⁶⁾

외국인 범죄수사를 전담하는外事수사과는外事수사계,外事형사계, 인터폴계 등 3계를 두고 있다.外事수사계는 국내 외국인 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지도와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外事형사계는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응하고자 기존 국제범죄수사대를 2010년 1월 재편하였다. 인터폴계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인터폴) 대한민국 중앙사무국’으로 재편하여 재외국민 관련사건·사고와 인터폴 공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76)外事경찰의 사무분장을 보면,外事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과 관련된 신원조사,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하며, 또한外事정보과는外事치안정보 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外事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 및 관리,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 및 수사지도,外事보안업무의 지도 및 조정,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를 담당하고,外事수사과는 국제형사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수사에 대한 기획 및 지도, 외국인과 관련된 중요범죄수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나. 지방경찰청 외사과, 외사계, 국제범죄수사대

최근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서울·경기·인천·부산·경남의 5개 지방경찰청은 보안부 내 외사과를⁷⁷⁾ 설치하여 외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외 11개 지방경찰청은 보안과 내 외사계가 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전국적인 외국인밀집지역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범죄의 증가로 인한 치안수요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제한된 인력으로 치안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경찰서 외사수사 인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지방청 외사기획·외사정보 기능을 통합하여 지방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창설하였다. 서울을 비롯하여 외국인 범죄관련 치안수요가 많은 부산·인천·경기·경남·충북·제주 등 총 7개 지방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청의 경우 외사과를 5개 ‘국제범죄수사대’로 재편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관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5개 ‘국제범죄수사’(2010.2)를 창설하여 외국인 범죄 전문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범죄수사대는 아직까지 인원, 예산, 장비 등의 지원이 타 부서보다 미흡한 실정에 있어, 외사수사요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외국인범죄 수사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경기청은 2010년 7월 29일 기존 외사범죄수사대를 국제범죄수사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1년 12월 현재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기 위한 5개 수사대를 편성하여 60명의

77) 외사과는 외사경찰에 관한 기획 및 지도, 재외국민·외국인 및 이에 관련되는 신원조사, 외국경찰기관의 협력 및 교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수사, 외사방첩 업무지도, 국제 공·해항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정보수집 및 지도, 불온 외국간행물의 단속 및 지도,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중요범죄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수사요원으로 429,469명의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어, 외사요원 1인당 7,158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경찰서 외사계 또는 보안과 외사요원

2011년 말 249개 경찰서 중 외국인밀집지역은 110개 관서로 44.2%에 해당되고 있으나, 외국인밀집지역 중 외사계를 설치한 경찰서는 44개 경찰서에 불과하다. 이외 경찰서는 보안계 내 1~2명의 외사요원이 있거나, 심지어는 보안계 요원이 겸직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 등 일선 외사경찰 인력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 이러한 열악한 조직과 인력을 가진 외사경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요청에 의해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알선조직의 단속’에 동원되고 있어 인권침해, 외교문제 등의 여지를 안고 있다.

2. 외국인 범죄수사의 문제점

외사경찰이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적과 인종, 상이한 언어와 문화를 비롯하여 소재 및 신원확인·검거 및 증거수집의 어려움과 함께 수사 활동의 광역화 등으로 인해 내국인의 일반적 범죄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다.⁷⁸⁾

가. 외사경찰의 인력 부족

2010년 12월 현재 경찰인력은 총 128,869명이며, 경찰관 101,108명

78) 이하의 내용은 김윤영,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확보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1집, 2007, 99-101 재정리; 박상준, “외국인범죄 수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31-42면; 김운곤, “외국인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조선대 법학논총, 2001, 291면; 임창호,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제30회 학술세미나, 2008 등을 참조하였다.

(78.4%), 일반직·기능직 등 3,844명(3.0%), 전의경 23,917명(18.6%)으로 구성되어 있다.⁷⁹⁾ 그러나 외사경찰관은 전체 경찰관의 1.1% 수준인 1,027명(2011.8 기준)의 인원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의 2.9%인 1,395,077명(2011.12)의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찰 1인당 내국인 담당 인원은 498명인데 비해, 외사경찰은 일반경찰의 2.7배인 1,358명을 담당하고 있어 점차 조직화·홍포화 되는 외국인 범죄 대응에 태생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일반경찰 1인당 담당 인원 498명을 고려할 때, 2011년 말 현재 331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⁸⁰⁾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최근 2년간('10-'11) 외국인 범죄수사 인력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 즉, 2010년 406명이던 외국인 범죄 전담인력은 2011년 7월 현재 328명으로 19.2%나 감소되었다. 그리고 2011년 8월 현재 외사인력 법정 정원 대비 전국 평균 결원율이 -5.08%, 서울지방경찰청은 -23.74%인 66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특히, 2011년 7월 현재 외국인 범죄가 가장 많은 서울은 전담인원이 137명에서 89명으로 줄었고, 부산 역시 전년도에 비해 외국인 범죄가 전혀 감소되지 않았으나 수사 인원은 53명에서 28명으로 감소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기청 국제범죄수사대 외사요원의 경우 1인당 7,158명의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다.

<표 4-19> 2011년 8월 기준 외사인력 결원 현황

구 분	전체			서울		
	법정정원	현 원	과결원율(%)	법정정원	현 원	과결원율(%)
외사 인원	1,082	1,027	-5.08	278	212	-23.74

* 자료: 경찰청, 2011년 국정감사자료

79) 경찰청, 2011 경찰백서, 361면.

80) 국내체류 외국인 150만 시대를 고려할 때 3,012명이 필요하다.

국내체류 외국인 및 범죄 증가에 따른 전국 지방경찰청은 외국어 전문 요원을 2011년 12월말 현재 194명을 채용하여 외사경찰로 활용하고 있으나,⁸¹⁾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 건수에 비취 볼 때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다. 이외에도 국내체류 외국인 귀화자를 외사경찰관으로 특별 채용하여 외국인밀집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⁸²⁾

나. 외사 및 형사 기능의 업무 한계

경찰청 외사기능 사무분장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수사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형사기능과 중복되는 점이 많다. 이로 인해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의 경우, 외국인이 피의자이거나 피해자일 때 외사기능과 형사기능 모두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외사기능의 전문 인력과 수사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형사기능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제범죄수사대가 외사범죄를 직접 접수하여 수사하는 사건 외 경찰서의 외사수사는 상표법 위반이나 원산지 미표시 등 극히 제한된 분야만 수사하는 실정이다.⁸³⁾ 유럽은 전체 범죄 중에 외사사범이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외사기능이 일반 형사기능과 대등한 조직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모든 외사사범을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⁸⁴⁾

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국내체류 외국인은 입국 전 자국에서 기초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

81) 223명을 채용하였으나 퇴직 2명, 퇴교 1명, 입교거부 3명 등으로 194명이 근무하고 있다.

82) 2011년 말 현재까지 중국(8명), 필리핀(1명), 인도네시아(1명), 캄보디아(1명) 등 4개국 11명의 귀화경찰관을 채용하여 외국인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83) 경기청 국제범죄수사 000팀장 인터뷰, 2012.5.23.

84) 이원희, “한국 내 외국인 조직범죄와 경찰의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59면.

고는 하나, 국내입국 초기 이들의 한국어 수준은 기본적인 대화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다. 물론, 외국인들이 체류 과정에서 기초적인 대화를 습득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되어 신문을 받거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경우 언어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수준에 있다. 수사경찰관 역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들의 언어로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와 다른 문화, 습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전문통역인 필요하다. 그러나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이 주요 국제통용어라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형사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외국인의 진술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전문통역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 외국인의 범죄율이 높은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몽골 등의 특수 언어 전문통역인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표 4-20> 외국어 전문요원 언어권별 현황

계	영어	일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불어	아랍어	스페인어	독일어	태국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미얀마어	몽골어	스리랑카어	인도어	필리핀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194	47	14		10	20	9	10	7	2	12	25	3	15	3		1	9	1	1	3	1	1

* 자료: 외사국, 2011년 말 현재.

라. 신원확인의 어려움

외국인 범죄수사의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 문제, 신원과 거소 확인 문제 등이 어려워지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90일을 초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규정(제31조: 외국인등록)하고 있어 이외 단기체류자나 불법체류자의 범죄피의자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등 일련의 형사절차에 필요한 범죄자의 신원파악이나 인터폴(Interpol)을 통한 국제수사공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자들은 위조여권, 위명여권, 타인명의 여권

등을 사용하고 있어 인터폴을 통한 국제수사공조를 할 경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후진국의 경우 호적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외국인등록사항을 조회하거나 입국신고서를 통해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신원확인이 어렵다. 이외에도 잦은 이직에 따른 거주가 일정하지 않아 소재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의 경우 소재 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사전 정보 수집은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다.

마. 외교 및 인권 마찰의 가능성

외국인 범죄수사는 내국인 수사와는 달리 경미한 실수가 인권·종교문제로 확대되어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 재판, 형 집행의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인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외국인을 피의자로 체포·구속할 경우 외국 영사관에 통보하고 영사관 원과의 접견·교통권 등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외국인범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수반될 수 있으며, 변호인 접견과 교통지원 문제, 구금시설에서의 처우 등과 관련하여 외교 및 인권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바. 부인 및 진술거부권 행사

외국인범죄 피의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내국인보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에는 외국인이라는 강한 권리의식, 타국에서 구속당하여 재판을 받는 불안감, 국내 형사사법 체도를 잘 모르고 자백을 하면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의심, 범죄를 부인하면 바로 석방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연관된 경우에는 귀국 후나 자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 등의 불안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임의출석이나 피의자로서 진술을 거부하고 서명날인도 모국어로 번역하지 않는 한 거부하는 사례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사. 검거 및 증거수집의 곤란성

외국인 피의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이 내국인 범죄에 비하여 훨씬 더 어렵다. 외국인은 수사 이직 등에 따른 거소가 일정하지 않아 이들의 소재 파악이나 신병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 외국인 범죄자와 범죄조직에 대한 첩보입수나 증거자료 수집·검거는 더 어려운 실정에 있다.

외국인범죄에 대한 내국인이 참고인으로서의 범행을 목격했다고 해도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외모의 유사성으로 인해 동일성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 수사관들 역시 언어장벽으로 수사진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어 전문통역인을 구한 후에 범법사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소멸의 가능성도 따른다. 특히, 국내체류 외국인이 계획된 범죄를 저지르고 난후 수사당국이 인지하기 전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에는 범죄자 인도 조약을 맺은 국가와는 재량적으로나마 범죄자 인도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는 나라와는 사실상 범죄자 인도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⁸⁵⁾

아.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관대

재판과정에서도 법원의 사법처리가 외국인이란 점에서 내국인보다 관대한 편이고, 재판확정 후 강제출국 조치를 고려해 실행선고 대신 집행

85) 외국으로 도주한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증거 및 정보의 수집, 여권의 진위확인, 피의자 인적사항의 확인, 전과 확인 등에 대해 외국의 법제도, 수사기관의 조직, 수사방법의 차이 등으로 원활한 협조가 어렵다.

유해를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법 집행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국인에 비해 벌금형 선고조차 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외국인범죄자의 구속영장 발부율과 기소율은 물론 형량이 내국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다.

3. 외국인밀집지역 내 외국인 범죄 상존

가. 외국인밀집지역의 슬럼(slum)화

‘슬럼(slum)’이란 ‘도시의 빈민굴’로 도시사회에서 지역 병리현상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빈민지역이나 주택환경이 나쁜 지역을 의미한다. 슬럼화의 원인은 사회적 낙후자나 반사회적 행위자들이 모여들어 도시지역의 일정지구에 생태학적으로 따로 군락을 이루기 때문이다. 슬럼은 사회적 낙후자의 피신처, 신참자의 학습장, 재기·갱생의 장소, 노동력 수급의 안전판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담당하지만, 반사회적 행위자의 은신처, 범죄의 온상 등 사회병리현상이 빈발하는 부정적인 기능도 존재한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밀집지역은 ‘낮은 소득수준’과 ‘후생복지 혜택의 부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후진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의 축적 등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상대적으로 잘 사는 선진국으로 이주해 온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⁸⁶⁾

이러한 선진국의 외국인밀집지역 특징이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밀집지역에서도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외국인밀집지역은 1990년대 초부터 중국, 동남아시아 등 대부분 저소득 국가 출신의 노동자들이 체류

86) 정광현, “외국인범죄 치안대책 연구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인하대 석사논문, 2010, 62-63면.

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⁸⁷⁾ 최근에는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와 러시아, 아프리카(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나 등) 출신 노동자들도 자국인들끼리 밀집지역을 형성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 국가 출신자들로 국내입국 후에도 ‘낮은 소득’과 ‘후생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질적 문화를 유지한 가운데 우리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밀집지역은 초기의 경우 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서울의 구로구 가리봉동 ‘중국타운(엔벤마을)’, 용산구 이태원동 ‘아프리카 쪽방촌’, 종로구 혜화동 ‘리틀 마닐라’, 구로디지털 단지(舊구로공단) 주변 구로구 대림동과 금천구 가산동 일대, 영등포와 광진구 일대, 경기 반월·시화공단과 안산·시흥 일대, 남양주시 마석 일대, 인천의 남동공단 일대, 부산 사하구 공단일대, 울산 온산·웅촌 공단, 경남 창원공단과 진해조선소 일대, 대구 성서공단 일대 등은 이미 ‘슬럼화’가 시작되었거나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는 외국인밀집지역이라 할 수 있다.

나. 슬럼화로 인한 범죄유혹 증대

우리나라 외국인밀집지역 노동자들은 대부분 저소득 국가 출신들로 이들은 열악한 고용상태에서 불규칙한 수입금마저 자국에 송금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적으로 외면된 반지하, 옥탑 방, 고시원, 쪽방 등의 자취방이나 셋방에 집단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불법체류자나 무직 노동자들은 불안감과 외로움 등을 달래기 위해 마약이나 환각제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민족애나 동료애로 인한 공동범

87) 물론 그 이전부터 형성된 서울 용산의 미군부대 주변이나 방배동의 프랑스마을, 이촌동의 일본인 거주 지역 등은 외국인밀집지역이 있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선진국 출신들로서 생활 수준이 높고 전문지식을 가진 고급인력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의미의 게토나 슬럼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죄에 연계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이외에도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임금, 내국인의 차별과 무시, 편견과 거부감 등에 대한 반한 감정이 높아지는 가운데, 외국인밀집지역 내의 열악한 치안환경을 이용하여 자생적 폭력조직이 결성되고 있다. 특히, 외국 폭력조직들은 국내 자생적 외국인 폭력조직 또는 국내 폭력조직과 연계하여 국내 진입을 모색하고 있다.

다. 집단소요 사태 가능

저소득 국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코리아 드림’을 이루고자 무리한 입국 경비를 마련한 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국하지만, 그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입국 전 꿈꾸어 왔던 ‘코리아 드림’과는 달리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 악덕업주의 임금체불, 내국인들의 차별과 무시·편견과 거부감 등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고자 외국인 노동자조합을 결성하거나 외국인 인권단체와 연대하여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철회’⁸⁸⁾ 및 ‘강제추방저지’⁸⁹⁾ 불법집회, 공권력 정면 도전⁹⁰⁾ 등의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

88)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대전·충청 비상대책위원회는 2007년 8월 2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난 3년간 지속된 정부의 단속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은 정부정책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 △“2003년의 대규모 단속 때 해고와 강제추방의 두려움으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절망 속에서 자살했던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 바라면서 미봉책인 단속이 아니라 인권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주노동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는 제도 아래서 차별과 억압을 감내하든가 ‘불법’ 신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이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법무부가 이 같은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달부터 연말까지 일정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정윤덕 기자, 연합뉴스, 2007.8.2).

89) 2003년 11월 16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강제추방저지’ 집회를 개최하여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한 바 있다.

90) 2005년 5월 외국인 노조위원장인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자 A씨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였다. 외국인 노조위원장 A씨는 8년 동안 불법체류를 한 사람이었다. A씨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직원이 민주노총 사람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카메라를 빼앗겼다. 당시 법무부 직원은 전

근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식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장 선출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극단적인 불만세력들과 연계될 경우 소요사태나 폭동으로 변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⁹¹⁾ 실제 2005년 프랑스 아랍계 이민자들의 소요사태(2005.10.27-11.17)는 파리 북부의 외곽 주택지대에서 2명의 아랍계 청년이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감전 사고로 숨지면서 대규모 소요사태로 이어졌다. 그 결과 1명이 숨지고 3,000명이 체포되었으며 두 달에 걸쳐 건물 300여 채와 차량 1만여 대가 연소되었다. 이 소요사태의 근본 원인은 아랍계 이민자들이 다른 유럽계 이민자들과 프랑스인들에 비해 훨씬 낮은 생활수준과 삶의 질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라. 외국인밀집의 조직범죄

국내체류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나 범죄자들이 불안한 신분을 은폐하고자 외국인밀집지역으로 모여들면서 슬럼화가 촉진되는 가운데, 폭력조직들이 결성되고 있다. 이들 조직들은 자국민들을 갈취하는 범죄를 넘어

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나중에 불법체류 단속반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가 체포되자 인권단체와 노조단체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표적 연행」 운운하며 인권침해로 몰아간 것이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한 단체의 도움을 받아 체포되면서 생긴 착과상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A씨를 국가에서 보호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한다. 현재 이주노동자 노조는 한국에 체류한 지 13년 된 S씨(이주노동자 노조 부위원장)가 이끌고 있다. 이들은 최근 反APEC 집회 등 각종 집회에도 참가하고 있다(“외국인 범죄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서울신문, 2007.5.24).

91) 2007년 2월 3일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는 고법판결 이후 인천 연수구에 있는 A교육학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강사 5명이 2009년 11월 12일 연수구청에 노조설립 신고를 하고 24일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받았다. 이들이 연장근로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자 학원 측에 이의를 제기한 한 외국인 강사가 보복성 징계를 받아 신분에 대한 불안감으로 노조를 결성하였으며 설립 당시 5명이던 조합원 수는 8명으로 늘었다. 2005년 4월 외국인 노동자 91명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나 노조원 대다수가 불법 체류자라 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돼 국내에서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노조가 설립 필증을 교부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연합뉴스, 2009.12.8).

최근에는 아편,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과 위조달러 반입, 총기밀매 등 국제적인 밀수조직이나 조직폭력과의 연계를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밀집지역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슬럼화가 촉진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범죄조직의 범법행위는 증가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8년에서 2011년 6월까지 외국인범죄 총 발생 건수는 81,260건으로 동 기간 10대 외국인밀집지역인 서울 구로, 영등포, 금천, 용산, 광진, 경기 안산단원, 평택, 수원서부, 화성서부, 시흥에 발생한 범죄는 17,324건인 21.3%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체류 외국인범죄가 5건 중 1건 이상이 10대 외국인밀집지역에서 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²⁾ 또한 UN의 ‘국가별 슬럼 인구 순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페루보다 한 단계 높은 세계 12위이며, 도시인구 중 슬럼 인구가 37%로 추산되고 있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전세계의 슬럼 인구는 9억 명이며 2005년에는 전 세계 도시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였다. 세계 각국의 슬럼 형태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인구과밀과 주택의 열악함, 주택 보유의 불안정성, 수도나 전기를 비롯한 공공설비의 부재 등의 공통된 특징이 국내 외국인밀집지역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⁹³⁾

제3절 외국인밀집지역 범죄 전망

1. 단기적 전망

첫째, 최근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됨에 따라 외국인밀

92) 유정현, “외국인범죄 최다지역 서울 일평균 19.2건 발생(국감 보도자료)”, 2009.9.26.

93) 마이크 데이비스(김정아 옮김), 슬럼, 지구를 뒤덮다, 돌베개 출판사, 2007; 김영번, “세계에 띄우는 ‘슬럼 경고장’”, 문화일보, 2007.7.6.

집지역을 중심으로 인종간의 갈등, 내·외국인간의 갈등, 범죄 조직간의 갈등에 의한 관할 경찰서의 치안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조직에 의한 살인, 강도, 강간, 마약, 조직폭력 등 범죄가 강력화 흉포화 되는 등 범죄유형과 국적이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국제교류가 빈번해지고 외국인 출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국적 다변화와 함께 신종마약류와 마약사용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외국인 폭력조직이 조직화,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범죄조직과 손을 잡고 여권위조, 밀수,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 신용카드 관련 범죄, 자금세탁, 마약밀매 등 국제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외국인 합법화 정책추진으로 불법체류자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문서를 위조하여 불법취업을 하는 등의 생활형 범죄는 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국내체류 외국인에 의한 고부가 산업인 산업기술 불법유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이나 국가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을 초월한 금융거래가 실시간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 피싱)이 점차 국내체류 외국인을 동원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화될 것이다. 중국·대만의 범죄조직이 국내체류 외국인과 연계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 · 장기적 전망

첫째,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2세들은 현재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있으나,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범죄환경에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들의 이탈이 증가하여 슬럼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외국인밀집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 저하,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이미 슬럼화되어 다양한 사회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둘째, 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들의 집단화, 조직화, 정치세력화로 집단 저항이나 폭력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센터’ 및 ‘이주노동자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공권력에 대항하는 시위를 주도하는 등 세력화할 것이다.

셋째, 불법체류자들이 창출한 수익금을 합법적 경로를 통해 해외송금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송금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외 불법송금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이나 기업체의 탈세루터 등 제2, 3의 범죄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많은 미국이나 유럽 등은 불법체류자와 불법취업자들에 의해 외화불법반출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넷째,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외국인들의 일자리 잠식에 따른 노동시장 악화와 외국인범죄의 강력화 흉포화 등은 국민들의 외국인 혐오증을 더욱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국민들 역시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 2011년 7월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테러와 같이 극단적인 세력에 의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를 자행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2012년 7월 2일 현재 “외국인범죄 척결연대”에⁹⁴⁾ 796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국내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 할수록 이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복지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체류 외국인 대다수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고 열악한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불법체류 취업자들은 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납세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영국의 경우 저소득 외국인의 납세기피로 인해 교육·의료 등 복지혜택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94) 2012년 7월 2일 현재 다문화 및 외국인범죄 범죄 반대 사이트로는 ‘외국인범죄 척결연대’(http://cafe.daum.net/antifakemarriage.), ‘다문화정책반대(cafe.daum.net/daculture, 회원수: 7,703명), ‘외국인범죄근절모임’(cafe.daum.net/checkhimout, 회원수: 142명), ‘외국인 범죄 피해자 시민연대’(cafe.daum.net/pcvcfw, 회원수: 65) 등이 활동하고 있다.

제5장 국내체류 외국인밀집지역 치안대책

제1절 외사경찰 조직의 치안역량 강화

1. 외사경찰 조직 개편

가. 외사경찰 조직 확대

1) 지방경찰청 외사과 및 외사부 확대 설치

2012년 6월말 현재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외사과가 설치된 지방청은 서울·부산·인천·경기·경남청 등 5개청에 불과하다. 지방경찰청의 외사경찰에 대한 지휘·관리와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 범죄예방과 외국인 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외사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외사계 설치 경찰서가 전체 경찰서의 1/2 이상인 지방청을 대상으로 외사과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전 경찰서에 외사계를 운영 중인 대구·울산·제주청은 우선적으로 외사과를 설치해야 한다. 대구청은 한강이남 최대 미군 주둔지역인 미군 제19지원사령부 등 6개부대가 위치해 미군 및 군무원 등 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제주청의 경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무사증 입국의 확대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⁹⁵⁾ 이외에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서울, 부산, 경기, 인천지방경찰청의 외사과를 외사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95) 경찰청외사과, “2011년 외국인 체류실태 분석결과”, 2012.2, 21면

2)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경찰서 외사과 시범운영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경찰서 중심으로 외사인력을 확충하여 외국인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한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할 때 외국인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 2월 현재 외국인밀집지역 6개 관할 경찰서인 서울 영등포·구로·금천·용산, 경기 안산단원·평택 지역에 등록외국인(161,819명)은 전체 등록외국인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이들 6개 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는 외사경찰은 1인당 평균 외국인 담당인구는 4,759명으로 전국 외사요원 1인당 평균 외국인 담당인구 1,911명의 2.5배에 해당되고 있다.⁹⁶⁾ 그럼에도 이들 경찰서 외사부서는 ‘계’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외국인밀집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들 관할 경찰서 외사계를 외사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표적인 외국인밀집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 단원 경찰서나 서울 영등포 경찰서의 외사계를 외사과로 확대 개편하여 시범 운영 후, 점진적으로 외국인밀집지역 관할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의 외사계를 외사과로 확대 개편하여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예산, 인원, 기존조직의 사기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나. 외국인밀집지역 외사경찰 조직 신설

1) 외국인밀집지역 외사계 신설

96) 경찰청외사국, “2011년 외국인 체류실태 분석결과”, 2012.2, 20-21면.

2007년 필자가 경찰청 외사국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 “외국인밀집지역 범죄실상 및 치안확보 방안연구”를 통해 제안한 5천명 이상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경찰서 외사계 신설방안을 일부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12말 현재 전체 249개 경찰서 중 ‘가’·‘나’급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경찰서는 44.2%인 110개로, 이들 경찰서 내에 등록외국인은 812,309명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110개 경찰서 중 40%인 44개서에 외사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66개 경찰서는 외사계가 없는 실정이다. 물론 경찰청은 외사계 미설치 66개서 중 ‘가’급 외국인밀집지역 관서 28개서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결국,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범죄가 흉포화, 강력화,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사계 미설치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경찰서 전원에 대한 외사계가 신속히 신설해야 한다.

2) 특정국적 귀화자 수사지원반(팀) 신설

외국인밀집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 영등포서, 구로서, 금천서, 용산서, 경기 안산 단원서, 평택서 등에 소수민족 귀화자 경찰관을 채용하여 범죄예방과 피의자사건을 전담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가칭 ‘외국인 수사지원반(팀)’을 신설하여 시범 운용한 후, 특정국적 외국인밀집지역에 축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경찰청에 신설된 외사부 산하에 가칭 ‘외국인 수사지원과’를 두고 ‘동포 지원계’, ‘동남아·동북아 지원계(베트남·필리핀·태국 등)’, ‘아프리카 지원계’, ‘유럽지원계’, ‘북미·남미지원계’ 등을 두는 방안도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인종 다문화사회인 미국은 경찰관 채용시 소수인종을 배려하여 각 인종마다 일정비율의 경찰관을 채용하여, 이들이 동일인종 밀집지역에 주로 근무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LA경찰국 내에 팀장

을 포함하여 동양인 수사관이 동양인 범죄를 전담 수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외국인밀집지역 ‘광역경찰서’로 재편

경찰은 외국인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방경찰청에 국제범죄 수사대를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범죄가 전국적 범위에서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들의 범죄예방과 수사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전문인력 부족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외국인 피의자가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⁹⁷⁾

<표 5-1> 서울 국제범죄수사대 관할구역 및 수사대 인원 현황

2011년 9월 현재

수사대(인원)	담당 관할구역
1대(28)	용산·종로 등 서울 서북권
2대(21)	혜화·동대문 등 서울 동북권
3대(24)	관악·금천 등 서울 남부권
4대(16)	강동·송파 등 서울 동남권
5대(17)	구로·영등포 등 서울 서남권

* 자료: 2011년 국정감사 자료.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인 범죄 발생 최다 지자체 관할 서울경찰청은 최근 3년('08-'10)간 총 21,018건, 연평균 7,006건의 외국인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는, 하루 평균 19.2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 지방청은 2011년 9월말 현재 5개 국제범죄수사대에 106명의 수사관이 서울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범죄 전체를 전담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구로, 영등포의 경우 2011년 6월말 현재 1,082건이 발생하였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국제범죄수사대 인원은 17명으로 턱없

97) 2012년 4월 경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외국인 피의자를 검거하여 조사를 하던 중 관리 소홀로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구로구의 경우 2011년 7월을 기준으로 이미 연평균 건수에 육박하는 635건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3년 평균 782건으로 하루 평균 2.14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제범죄수사대의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3만 명 이상이거나 범죄다발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경찰서를 가칭 ‘광역경찰서’로 확대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광역경찰서 내에는 귀화자 외국인을 일정비율 채용한 후 동일인종 밀집지역에 배치해야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밀집지역에 대규모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시청의 경우 5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⁹⁸⁾

4)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경찰기관 재편

현재 지방경찰청에 운영 중인 국제범죄수사대를 외국인밀집지역으로 일부 이전하거나 새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밀집지역이 형성되면서 동 지역이 ‘다문화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다문화 특구를 전담하는 ‘원곡 다문화 파출소’를 개소하여 치안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으로 다문화 특구 내 외국인에 의한 치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를 일부 이전하거나 다문화 파출소와 통합 또는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파출소나 지구대를 외국인을 담당하는 특화된 편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외국인관광객민원접수 센터 설치

최근 한류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의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

98) 동경경찰주재관, “외국인밀집지역 치안대책에 관한 日경찰자료보고”, 2007.8.8.

한 치안확보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외국인관광객민원접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센터에는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상담원을 상주시켜 외국인 관광객의 강·절도 등 범죄피해 신고 등에 대해서는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상담원은 영어 필수자와 함께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중 1개 이상 구사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 배치하면 될 것이다.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시가 2006년 8월 10일부터 ‘외국인관광객민원접수센터’(SATE: Servicio de Atencion al Turista Extranjero)를 정식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외사수사경찰 인력 및 예산 확보

가. 외사수사 전담요원 확충

국제사회가 하나의 생활권 속에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외국인 범죄가 조직화 국제화되는 등 시공을 초월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국인 범죄 수사 활동은 각종 단계에서 국제수사 공조와 협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외국의 수사실무, 범죄정세 등에 관한 지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어 실력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즉, 각국의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범죄도 국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범죄수사전담’ 요원 확충은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1) 외국인밀집지역 외사수사전담 요원 확충

우리나라는 국내체류 외국인 15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강력화, 흉포화, 조직화되는 외국인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사수사전담 요원을 확보하여 외국인밀집지역이나 외국인 범죄다발지역 관할 경찰서에 배치하여 선제적 범죄예방은 물론 범법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경찰은 일선 현장에서의 외사사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982년부터 외국어 특채자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으나, 지역별 외사치안수요의 변화 및 인사요인으로 인한 수요·공급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⁹⁹⁾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밀집지역 내 다수 체류국적 및 외국어 특채자 배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정 외국어 수요자를 파악하여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현재 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외사수사전담요원을 확보하여 배치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범죄수사대에 배치된 인력 중에서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미흡한 자원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사전 문요원 선발의 전제조건은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자를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경기지방경찰청 안산단원서 외사국장 현장 간담회시 현장 외사경찰관들은 외국어 가능 경찰관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수사사건시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을 호소한 바 있다.¹⁰⁰⁾

2) 선진국 수준 외사경찰 인력 확보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체류 외국인이 우리나라 총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1년 8월 현재 외사경찰관은 경찰관 전체의 1.1%인 1,027명으로 일반경찰 1인당 내국인 담당 인원은 498명인데 비해, 외사경찰은 일반경찰의 2.7배인 1,358명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표적인 외국인밀집지역인 6대(서울 영등포·구로·금천·용산, 경기 안

99) 경찰청외사국, “2011년 외국인 체류실태 분석결과”, 22면.

100) 경기청 외사과 인터뷰 결과; 서울신문, 2012.1.13.

산단원·평택) 관할 경찰서에 근무하는 외사경찰은 1인당 평균 등록외국인 4,759명(2012.2)을 담당하고 있다.

결국, 국내체류 외국인 150만 시대를 고려해 볼 때 3,012명의 외사경찰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아래 도표는 다문화, 다인종 시대에 대비한 외사경찰인력 소요를 판단한 것이다.

<표 5-2> 체류외국인 150만 시대 대비 외사경찰 인력 소요 예상

예상 체류외국인	경찰 1인당 담당인구 기준	외사경찰 경찰인력 소요 추정
1,500,000명	498명	3,012명
	450명	3,333명
	400명	3,750명
	350명	4,286명
	300명	5,000명

<표 5-3>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비교

(단위 : 명)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러시아	일본
498	434	365	266	278	500	109	498

* 자료: 2011 경찰백서, 362면; '09년 주요국가 치안통계.

3) 외사경과자 관리 강화

국내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밀집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현재 외사수사 인력을 확보하고자 도입한 외사수사 경과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확보된 외사 경과자에게 승진의 기회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타 경과로 전과를 금지하고 외사부서에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외사경과자 승진 정원과 예산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나. 귀화자 특별채용 배치

1) 귀화자 특별 채용 후 동일인종 외국인밀집지역 배치

우리나라 역시 이미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된 현실을 인식하여, 소수민족 귀화자를 경찰관으로 채용한 후 동일인종 밀집지역에 근무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즉, 소수민족 배려차원에서 한인 2세 동포(중국, 러시아)나 귀화인(동남아, 아프리카 등) 등을 경찰관으로 일정비율 특별 채용하여 동일민족 밀집지역에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들은 양국(모국+한국)의 문화, 풍속, 관습, 제도를 겸비하고 언어까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민에 대한 첩보·정보수집의 장점이 있어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자국민 피의자들의 진술을 정확히 대변할 수 있어, 외교적인 마찰이나 인권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¹⁰¹⁾

<표 5-4> 외국의 소수민족 경찰관 채용 현황

국가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경찰국의 경찰관 9,400여명 중 한국인 경찰관 11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한국인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음. - 언어적 문제와 문화적 차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사회와의 교류 및 언어Bank(통역서비스) 등을 활성화하고 있음. ▷ LA경찰국은 LA지역에 동양인(한인, 중국인)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동양인 수사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팀장포함 7명의 동양인 수사관이 동양인 범죄를 전담 수사하고 있음.
오스트레일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레일리아는 외국인에 대한 치안대책으로 외국인(소수민족) 출신을 경찰관으로 채용하거나 소수민족출신 연락관을 경찰서에 배치하고 있음. - 오스트레일리아는 외국인에 대한 치안대책으로 △소수민족의 출신의 경찰관, 2개국어 이상의 언어를 할 줄 아는 경찰관의 적극 채용 △모든 경찰관에 대한 소수민족의 문화교육 △경찰제도, 방범활동, 소년문제, 교통문제 등에 대한 다언어에 의한 홍보자료 발행 △경찰서에 소수민족 연락담당관 배치, 오스트레일리아 제도, 법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과 방범상담을 실시하고 있음.¹⁰²⁾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토론토 경찰국은 이민자와 지역사회 관리를¹⁰³⁾ 위해 자원봉사자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지역경찰연락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수민족 전담 경찰관을 두어 경찰과 이민자지역사회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며, 문제해결과 특별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101) 당나라 시대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이민족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찰은 2006년 외국어 및 외국문화에 능통한 중국 출신 귀화자 특별 채용을 시작으로 소수의 귀화경찰관을 특별 채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수에 거치고 있어 많은 수의 인력을 특별 채용하여 외국인밀집지역에 배치해야한다.

전국 지방경찰청의 경우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2010년 10월말 현재 까지 전국적으로 165명을 특채하였다. 그러나 외국인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외국어 특채자는 지속적으로 충원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인 밀집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2-3곳에서 중국동포출신 귀화자(중국동포 등) 2-3명을 특채하여 중국인 전담수사를 담당 하도록 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주요 외국인밀집지역 관할서로 축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¹⁰⁴⁾

전술한 바와 같이 다문화, 다인종 사회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은 경찰관 채용시 소수인종을 배려하여 각 인종마다 일정비율의 경찰관을 채용하거나 소수민족출신 연락관을 동일인종 밀집지역 관할 경찰서에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2) 외국인 ‘정보원·연락관’ 활용

귀화인을 대상으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가칭 ‘정보원’이나 소수민족출신 ‘연락관’을 채용하고 동일민족 외국인밀집지역에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귀화자가 정보원이나 연락관으로 활동하게 되면 경찰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소정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경우 귀화자 특별채용시 인센티브를

102) 김일만, “외국인의 불법취업과 범죄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0, 52면.

103) 캐나다 토론토 경찰국은 이민자와 지역사회 관리를 위해 ‘Community Mobilization Unit’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자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지역경찰연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104) 법률적 문제, 국적별 경찰관 인력 확보 문제(1인당 담당 외국인), 예산문제, 교육문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 국제범죄수사대 정착 지원¹⁰⁵⁾

1) 인원확충

2009년 경기청에 처음 실시한 국제범죄수사대는 현재 7개 지방청에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원, 예산, 장비 등의 지원이 미흡하여 외사수사요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신속한 외국인범죄 수사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

경기청의 경우 경정 또는 경감을 대장으로 5개 국제범죄수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사대별 수사전반을 지원하는 지원 요원은 1-2명에 불과하다. 통역요원 역시 외사계에 1명이 있을 뿐, 수사대에는 없는 실정이다. 1개 수사대는 경위를 팀장으로 하는 2-3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팀별 요원은 팀장 포함 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조직과 인원으로 경기청 외국인범죄를 수사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국제범죄수사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제범죄수사대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첫째, 5개 수사대장 모두 경정으로 보해야 한다.

둘째, 1개 수사대는 지원팀을 포함한 4개 팀으로 확대하고, 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셋째, 팀원은 외국인 범죄가 강력·흉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무도 유단자 8명을 4개조로 편성하여 2인 1조가 수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2명 중 1명은

105) 국제범죄수사대는 경기청 국제범죄수사 000팀장과의 직접 인터뷰(2012.5.24)를 통해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작성한 것이다.

외국어 수사능력이 있는 자로 편성해야 한다.

넷째,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적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개 수사대에 적어도 3-4명의 전문 통역인을 확보하여 수사시 즉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통역인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찰관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시민단체나 대학교, 퇴직 외사경찰관 및 주재관 출신자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필요한 요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나 각종 친선행사 등을 통해 소속감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2) 예산반영의 현실화

국내체류 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국적 범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자들은 기동력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범행을 한 후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은신하고 있기 때문에, 외사수사 요원들이 이들의 소재와 관련한 첩보를 획득할지라도,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장시간에 걸쳐 잠복한 경우가 빈발하기 때문에 차량운행 경비와 숙식비 등 수사경비 일부분을 사비로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시간외 수당 월 68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경비는 형사과 외근형사는 현실에 맞게 지급받고 있으나 외사 요원은 한정된 일정액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외사수사 요원에게도 현업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함은 물론 형사과 외근형사 같은 수준의 수사경비를 반드시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기동장비 보급의 현실화

외국인 범죄가 광역화됨에 따라 외국인 범죄수사시 필요조건 중의 하나가 기동력 확보에 있다. 그러나 국제범죄수사대의 경우 12승 봉고차

1대와 승용차 1-2대가 지급되고 있다. 경기청의 경우 5개 국제범죄수사대 12개 팀에 팀장포함 58명의 수사요원이 사용할 수 있는 기동력은 봉고차 5대, 승용차 7대에 불과하다. 현행 국제범죄수사대 조직 하에서 기동화 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인범죄 수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팀별 2대(승용차 1, 봉고차 1)의 수사차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외사전문 요원 양성

가. 외사요원 양성 교과목 개설

우리나라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국내체류 외국인범죄를 비롯한 국제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외사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법이나 외국어 능력 등 다방면에 대한 전문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경찰교육원에서는 외사첩보 습득에 관한 지식 및 산업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수사기법 등 외사요원이 기본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외사요원 양성과정’ 및 ‘외사정보 실무과정’을, 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 국제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제범죄 수사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인트라넷 망인 온나라 동영상 외국어 교육(경찰청 사이버 외국어학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망은 기존 6개 언어(영·중·일·불·러·스페인어)에 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몽골어·아랍어 등을 추가하여 동남아권 어학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⁰⁶⁾

외국인 범죄는 피의자와의 언어소통문제, 외국과의 외교문제, 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차이나 법제상의 차이로 인한 처우, 인권문제 등 외국인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가 장애요인으로

106) 경찰청, 2011 경찰백서, 2011, 347면.

작용한다.¹⁰⁷⁾ 따라서 교육기관을 통한 외국어 능력향상과 함께 외국인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등에서 체류외국인 민족(소수민족)의 문화(언어, 관습, 풍속, 제도) 등에 대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외사경찰이 소수민족의 문화, 법제도, 풍속, 관습 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 외사 전문교육기관 개설

외사경찰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외사전문교육기관’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외사전문교육기관은 외사수사경과자로 선발된 신입경찰에 대한 기본교육을 시킨 후 외사부서 시보로 1년 이상 실습경력을 갖추도록 한 다음, 적격자를 선정하여 외사기획, 외사정보, 외사수사, 사이버관련 교육 등 외사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외사경과를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사경과를 받은 후에도 매 2~3년마다 외사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정의 단기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찰, 검찰, 국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외사전문교육기관인 가칭 ‘외사수사연수원’을 개설하여 국제범죄 전문수사관을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경찰청에 국제수사연구소에 국제수사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국제범죄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한 경찰관 중에서 다시 적격자를 선정하여 현지 어학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 외사수사 요원 해외 파견교육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범하는 범죄는 모국문화(관습과 사회제도, 형사

107) 이병문, “외국인범죄 증가에 따른 외사경찰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석사논문, 2012,2, 75면.

법 등)와 한국문화의 이질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외사수사관의 해외유학, 장기연수 등을 통해 외국인의 문화, 풍속, 관습,
사회제도를 체험시키고 폭넓은 국제교류경험을 겸비토록한 후 외국인밀
집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할 것이다. 즉, 외사수사요원의 해외유학,
장단기 연수, 외국 자매결연 등을 통한 상호교류, 외국수사기관이나 수
사연구기관에 파견, 국제범죄 및 조직범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외국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범죄예방 및 수사공조에 일조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¹⁰⁸⁾

라. 통역지원 체계 인프라 구축¹⁰⁹⁾

경찰은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112신고 전화통역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112접수요원이 통역서비스 활용법 미숙
지로 인한 통역연결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통역연결 활성화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6일부터 11일간 경찰청(외사국) 주
관으로 외국인 112신고 접수 FTX를 실시한 결과 통역서비스 연결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전화통역서비스 활용법 홍보 및
112신고 접수요원에 대한 지속인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은 외국인 피의자 관련 사건수사 및 민원상담에 통역인을 활용하
고 있다. 현재 해외유학 및 근무경력자와 귀화자, 외국어학원 강사, 외국
어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인 통역요원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전
술한 바와 같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인 미국은 이민자들이 언어장애로 차
별받지 않도록 연방법 및 대통령 명령과 연방정부 등이 통역운동 가이드라
인(Guideline)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경찰은 수사(조사)등에 필요한 통
역지원 업무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직원(경찰, 일반직 병용) 중에서 ‘통역

108) 박장식, “미국, 캐나다 법집행기관 연구”, 경찰청, 2003, 32면.

109) 김윤영,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확보 방안 연구”, 105-106면 참조.

요원'을 확보한 다음에 필요한 등급에 따라 시간당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¹¹⁰⁾

첫째, 외국인 범죄사건 수사와 민원상담을 위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전문통역인 선발고사를 통해 전문통역인 자격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자격증 취득 후 통역활동을 수행한 우수자원이 경찰관 모집에 응시할 경우 가점부여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현재 경찰통역센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위촉 통역원은 수사나 상담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통역을 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찰통역관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의경제도 폐지를 고려하여 전·의경 통역요원을 경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된 후, 중·장기적으로 민간통역인을 경찰통역관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표 5-5> 통역요원 지역별 현황('09년)¹¹¹⁾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571	421	262	201	200	55	71	103	579	157	305	234	198	207	153	359	66
경찰관	840	128	56	78	37	18	15	22	173	33	82	34	39	37	29	27	32
민간인	2,731	293	206	123	163	37	56	81	406	124	223	200	159	170	124	332	34

* 자료: 경찰청, 2010 경찰백서, 309면.

셋째, 교육기관·시민단체·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센터 등과 함께 통역지

110) 경기지방경찰청의 경우 민간통역인에게 영어, 일어, 중국어는 1시간당 3만원, 기타 외국어는 3만5천원의 통역비용을 지원하고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도 제공하고 있다.

111) 경찰청은 1992년 9월 개방화시대에 따른 외국인 범죄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개 국어 요원 36명을 배치, 통역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관광객 등 수요까지 확대해 현재는 민간요원 3,000명을 포함해 전국 경찰에 3,600여명의 통역담당자를 두고 필요에 따라 각 경찰서 등에 파견하고 있다. 경찰 운영 통역서비스의 600여명은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이지만 나머지는 민간 통역인이다. 민간 통역인 제도는 각 지방경찰청 내규에 따라 자체 고용해 통역 건당 임금을 주는 체제로 운영한다.

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외국어 통역원을 모두 확보하기에는 예산상, 인력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유관 기관, 대학교, 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센터 등과 통역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해야 한다. 외국인밀집지역의 관할경찰서나 지구대는 관할내의 외국어학원, 대학교, 통역지원센터 등과 우선적으로 통역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주요 외국인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각국 주재 대사관 직원을 전문통역인으로 활용하여 인권문제나 외교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시민단체 ‘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 센터(2006.6.11)’와 ‘헬프라인(2007.2.21)’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¹¹²⁾

넷째, 통역인에게 형사절차의 이해를 돕는 ‘통역핸드북’을 배부하여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본부에 통역센터를 운영하고, 통역인에게 형사절차의 이해를 돕는 통역핸드북을 배부하는 등 외국인 범죄수사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마. 전담 멘토 도입

외국인 범죄사건에 대한 전담 ‘멘토(mentor)’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범죄가 발생하면 그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형집행 등 일련의 형사절차 과정에서 외국인범죄 사건마다 전문통역인이

112) 경찰청 외사국은 2012년 2월 17일 다문화가정 등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각종 피해신고를 원활히 하고자 전화통역서비스 대상에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가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661-2025)와 여성가족부 위탁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추가했다. 이로써 전화통역서비스는 기존 티티콜(02-1330, 한국관광공사, 영어 등 3개어 통역), BBB(1588-5644, 사단법인비비비코리아, 영어 등 17개어 통역), 피키펀(통역전화서비스, 영어 등 7개어 통역) 등 3개에서 5개로 늘었다. 이 중 외국인종합안내센터 통역서비스는 경찰전용 연결망에 구축했다. 이로써 기존 영어, 일본어 등 17개 어권에서 필리핀어·캄보디아어·우즈베키스탄어·방글라데시어·파키스탄어·미얀마어·네팔어 등 7개 어권을 포함, 모두 24개 어권으로 통역가능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전담하여 사건 종결까지 외국인과의 통역·번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멘토’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멘토가 하나의 범죄사건 전담할 경우, 그 범죄사건 전반을 파악할 수 있어 형사절차과정에 필요한 통역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산, 인력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전담 ‘멘토’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외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퇴직 외사경찰관이나 주재관 등의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제2절 외국인밀집지역 중심의 치안대책

1.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가. 홍보활동

유관기관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외국인범죄 실상과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외국인들을 우리사회 어떻게 정착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된 관심을 가져왔을 뿐,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 범죄로 인한 슬럼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여 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 외국인들이 자행한 살인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의식은 외국인 혐오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의 실상과 문제의 심각성을 수면위에 놓고, 이들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현장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한공관, 경제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이

익단체(중소기업협의회, 건설협회, 요식업협회 등) 등과 정기적으로 접촉하여 외국인밀집지역에 모여들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 문제와 범죄현황을 적극 홍보하여 범죄환경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언론기관을 통하여 외국인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들과 민간단체, 외국인 지원단체 등은 외국인 범죄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하고, 경찰은 이들 단체들과 함께 외국인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만, 외국인범죄 홍보는 인종차별문제, 외교적 마찰 문제 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밀집지역의 국·내외 거주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유인물 및 캠페인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치안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국어로 제작된 방범홍보 유인물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 유동다발지역, 범죄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범죄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다독하는 ‘교민신문’, ‘취업광고신문’ 등에 외국범죄의 심각성과 처벌 규정 등을 주기적으로 게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즉, 외국인이 범죄를 자행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 응답식으로 작성하여 게재할 필요가 있다. 2012년 6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어울림홀에 모인 주요 중국 교민 단체장들과 중국 동포 주요 언론사 대표 등 27명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가장 궁금해했다. 이들은 각종 범죄 유형을 예로 들며 “예컨대 이 경우 형벌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 질문한 바 있다는¹¹³⁾ 사실에서, 외국인범죄 처벌 규정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의 더욱 요구되고 있다.

113) 유마디, “술 마시고 행패 부리면 어떤 벌 받는지 한국의 量刑기준 제대로 좀 알려달라”, 조선일보, 2012.6.21; 특히 이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국 동포 언론인은 “우리에게도 위기의식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술을 먹고 누구를 때리면 감옥에 간다든지, 강도짓을 하면 강제 추방을 당한다든지... 처벌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나.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 확대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류외국인의 범죄 실태와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각종 설문조사, 정책발표 등을 통하여 일반인의 관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필자가 2007년 경찰청 외사국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안산 단원경찰서 원곡지구대에 외국인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 홈페이지를 통한 외국인 범죄 신고요령이나 대처방안 등과 아울러 한국의 형사법, 출입국관리법, 문화, 제도, 관습,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민원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 관련단체와 지원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성향, 범죄대책 등을 홍보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림 5-1> 일본 교통규칙 홍보사이트



이외에도 체류외국인 교통규칙 안내 사이트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관련 가해자 및 피해자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외국인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시행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다국어로 구성된 홍보책자를 발행하여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아이치현(縣)은 “일본의 교통규칙을 아십니까? 제하의 한국어·중국어·영어 등 6개 국어로 된 외국인 대상 교통규칙 안내용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 사이트는 보행자·자전거·자동차 관련 기본규칙, 차량고장 등 긴급 상황 또는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신고요령 및 운전면허증·자동차 보험 관련 사항을 16분 소요의 미디어 영상자료로 제작한 후 각 관공서 민원실에 비치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외국인 유학생 수강학교 등에 무료로 대여하는 등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¹¹⁴⁾

다. 경찰관서 ‘외국인 쉼터’ 제공

외국인밀집지역과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구대나 파출소에 외국인이 언제든지 찾아 올 수 있는 ‘외국인 쉼터’를 제공하여 경찰관과의 유대감을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외국인 쉼터에는 컴퓨터, 다국어로 번역된 한국의 형사법, 출입국관리법, 문화 등 외국인이 한국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홍보자료 비취 등을 통해 범죄예방을 모색할 수 있다.

라. 찾아가는 기초법률 교실 운영

외국인 근로자 대다수는 국내법과 사회문화 현상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한국법 및 위반시 처벌 조항 등 기초 법률 안내와 문화적응 교육 등을 위해 근로 현장 등을 통해 ‘찾아가는 기초법률 교실’을¹¹⁵⁾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대상 외국인들

114) 경찰청 외사국, “주요국 치안시책”, 2011.11.

의 직업(근로자), 연령(아동), 성별(결혼이주여성), 국적 등의 특성을 고려한 교재와 통역인을 참가시켜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에 범죄예방 교실 시간을 배정받아 상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폴리스 아카데미 운영

현재 전국 경찰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서 책임자의 관심도와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의 전문성에 따라 교육효과와 시민의 참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시민경찰학교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함은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폴리스아카데미를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찰서 또는 경찰교육기관에서 경찰활동 소개 및 홍보교육을 통해 경찰과 외국인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경우 범죄예방은 물론 한국 사회에 적응과 이해를 돕고 소속감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¹¹⁵⁾

2.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가. 유관기관과의 '상설협의기구' 구성

외국인 범죄의 특성상 출입국관리국, 검찰, 세관, 국가정보원, 노동부, 외교통상부, 주한 외국공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외국인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115) 최근 외국인 및 지원단체에서 '범죄예방 교실'이라는 표현이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기초 법률 교실'이란 순화된 용어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116) 김원희, "한국 내 외국인 조직범죄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69면.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기관간의 정기적인 접촉과 정보교환을 통해 범죄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국공관, 공항과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협조하여 범인의 신원파악과 출입국 사항 등을 파악하여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시민단체 등에 범죄예방 프로그램 지원

외국인과 연관된 시민단체, 회사 등에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외국인근로자 인터넷 방송’,¹¹⁷⁾ 외국인노동자 무료 검진,¹¹⁸⁾ ‘아시아 공동체학교’(부산), ‘이주노동자 상담소’,¹¹⁹⁾ ‘다문화축제’¹²⁰⁾ 등 외국인지원 행사와 시민단체 등에 ‘범죄 상담소’ 운영과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해할 것이다. 범죄예방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체류외국인이 취업 중 주의사항, 한국 소개,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형사법제, 문화(관습, 풍속, 제도 등) 등에 대한 동영상물과 범죄예방 광고물, 표어,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정부의 외국인 지원정책인 ‘방문취업제’, ‘외국인 이민 허용정책’, ‘자진귀국’, ‘한국어능력시험’ 등과 연계하여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다. ‘외국인 치안자문위원회’ 구성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는 외국인 지원 단체 인사나 지역인사(유흥협회, 상가협회 등) 등을 위원으로 하는 가칭 ‘외국인 치안자

117) 경기도 오산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터넷(www.owcc.or.kr/gnu4/omwradio.html) ‘오산이주노동자라디오방송국’(오산노동자 문화센터)이 설립되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118)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보건소는 2006년 8월 24일부터 매월 2차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119) 의정부이주노동자 상담소, (사)국경없는마을(안산시 단원구) 등 2007년 8월 현재 총 70여개 센터가 운용되고 있다(<http://migrant.kr>, 2008.8.10검색).

120) 2007년 6월 3일 잠실운동장에서 다문화축제를 시행한 바 있다.

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외국인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교환과 범죄예방에 대한 공동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은 범 정부차원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계기관 연락회의'를 개최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라. 외국인밀집지역 특정국적 외국인과 합동순찰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은 빈곤이 재생산되고 범죄가 빈발하는 슬럼화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거리와 유흥업소, 외국인 범행 대상 업소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정보원과 합동순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중국인(한국계 제외) 다수체류지역 상위 5개서는 경기 안산단원동과 시흥, 서울 동대문과 서울 광진, 경북 경산을 비롯하여 베트남 다수체류지역인 경기 화성서부·시흥·김포, 경남 김해서부, 인천 남동 등 특정국적 외국인밀집지역에 같은 민족 외국인 정보원과 합동순찰을 강화하여 첩보 및 정보 수집을 통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외국인밀집지역에 외국인 '자치방범위원회'를 결성하여 경찰과 합동순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9년 5월 다문화특구로 지정된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특구에 지난 3월 25일 외국인 자원순찰대가 결성되었다. 경찰과 외국인주민센터가 외국인 순찰대와 치안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경우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 자원순찰대 활동 결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외국인밀집지역에 인종별 커뮤니티를 결성하는 방안을 유도할 수 있다.

마. 외국인범죄 연구 지원

국내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통한 범죄 예측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

구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 내용은 외국인 범죄 위험 수준, 범죄지수 개발,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 증가율 예측, 외국인 범죄 흉포화에 대한 사회적·심리적 원인 분석,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효과적 치안대책 방안, 외국인 혐오증과 과잉수사 대책 방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회인식, 외국인 인권문제, 선진외국의 외국인범죄 및 다문화 대책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자료는 외국인 정착지원과 치안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연구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바. 치안활동 인프라 구축

최근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외국인밀집지역은 현대 도시의 전형적인 특징인 고밀도, 혼잡성, 다양성, 익명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되고 흉포화되고 있다.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력에 의한 전통적인 범죄예방활동은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범죄유발 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외국인밀집지역 환경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밀집지역 지자체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경찰 등과 연계한 치안환경을 다음과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¹²¹⁾

첫째, 외국인밀집지역이나 범죄다발지역에 가로등·방범등을 확대 설치하는 등 도로 정비, ‘밤 길 밝히기’ 사업, CCTV 확대 설치, 관제센터 운용 경찰서(외국인 도움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간의 협력 체제 등을 구축해야 한다. 이외에도 외국인밀집지역 등에 대한 녹지 조성 및 벽화 그리기 등 주민 친화적인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이타운, 베트남타운 등 외국인밀집지역을 양성화하여 슬럼화를 차단해야 한다.

121) 안산단원경찰서, 외국인 보호 및 범죄예방·수사 매뉴얼, 2011 참조.

둘째, 여성가족부와 경찰합동으로 범죄피해 신고체제를 구축하고, 범죄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범죄피해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문화센터를 외국인 도움센터로 지정하여 외사요원과 다문화지원센터 간 지역별 업무협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경찰 치안시책 홍보, 범죄예방 교재나 여성가족부 정착 지원 안내서 등을 전국 산하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교육·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맞춤형 범죄예방활동

외국인 범죄예방활동 요령, 지침 등은 상급기관의 지침서 등으로 제작,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실무 외사경찰은 한국 법에 대한 무지, 외국인 패거리 문화, 도박문화 등 외국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¹²²⁾

첫째, 불심검문 현장에 검문대상 외국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입간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외사특채자(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중국 등) 및 민간인 통역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관할 경찰서 정보관이 외국인 지원단체 등에 흥기소지 불심검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거부감 해소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흥기소지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 경우 신체접촉이 아닌 스캐너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스캐너를 이용하면 불심검문 대상 외국인의 불쾌감을 해소, 인권 보호, 사고의 위험성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국내체류 외국인의 문화적 특성 중의 하나가 흥기소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외국인밀집지역이나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흥

122) 안산단원경찰서, 외국인 보호 및 범죄예방·수사 매뉴얼, 40-55면 참조.

기소지는 불법행위임을 홍보하는 다국어 플래카드나 입간판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기존 선전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방안도 있다.

셋째, 외국인 공동체 대표와 공동체 리더 등 공동체 관계자들과 잦은 접촉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외사계 직원 개인별 외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외국인 공동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불법도박행위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특히 중국인) 중에는 도박을 불법행위라기보다 단순한 놀이,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강하기 때문에,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불법도박 현장에 통역인을 대동하여 자국과 다른 한국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불법도박은 외국인밀집지역 내 가정집이나 외국계 식당, 공단 내 기숙사 등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불법도박 개장 의심 장소에 대한 D/B를 구축한 후 수시로 점검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도박 도구 판매상을 추적하여 판매금지 조치로 불법도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다섯째, 최근 차량을 이용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외국인들의 차량이용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 차량 소유주에 대한 D/B'를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 일명 '대포차', 무면허 운전이 내국인에 비해 많으나, 외국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현황 데이터가 없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외국인 검색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밀집지역 불심검문이나 외사활동시에 외국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와 세부사항 등을 파악하는 한편, 각 파출소, 교통사고조사계 등 각 기능별로 협조하여 외국인 소유 운행차량을 발견시 외국인 인적사

항·차량번호 등을 의사계로 통보하도록 하여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여섯째,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 저소득가 출신으로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외국인밀집지역이나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은 다문화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다국적 언어를 통한 무단횡단 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준수 현수막이나 교통방송차량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외국인 고용 희망기업체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신고 및 범죄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T/O 배정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체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고용 기업체(T/O 배정 기업)의 경우는 범죄예방 교육 여부를 가지고 T/O 유지나 확장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여덟째,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용 가능한 정보원을 동원하여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적절한 치안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6장 결론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국내 체류외국인들이 급증함에 따라 다양성, 익명성, 혼잡성 등이 보장되는 외국인밀집지역으로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범법자들이 몰려들면서 슬럼화를 촉진시켜 치안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가 점차 전문화, 국제화, 정치세력화, 다양화, 강력화, 흉포화, 조직화, 지능화, 공범화되는 등 그 수법과 국적이 다양화되면서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이 현실화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범죄 실태파악과 정보수집의 어려움, 외사수사 전담인력의 부족, 외국인 피의자와 언어소통문제, 인권과 외교문제, 민족문화·종교적 이질화에 따른 처우문제 등 다양한 갈등과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치안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고용업주, 노동계, 시민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 유기적 협조로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외국인 체류현황과 실태 파악, 외국인 범죄 신고접수 현황과 발생건수 분석·평가, 범죄예방 홍보, 인터넷 인프라구축, 죄종별·국적별 범죄통계 정리 및 분석, 범죄경력관리와 외국인밀집지역 실태 파악과 대책, 외사경찰의 종합적인 역량 강화 등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하고, 인권침해와 외교 문제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종합적·체계적·미래지향적인 치안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체류 외국인 피의자를 전담 수사하는 외사경찰은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국내체류 외국인 피의자가 낯선 외국에서 조사를 받는 불안과 두려움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대해 좋지 않는 인

식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한국 혐오증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범죄자 상당수는 생활고를 비롯한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들을 교정시설에 방치하지 말고 직업훈련 등 재사회화 교육을 실시한 후 석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이들이 귀국한 후 일정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0년 개소된 천안 외국인 전담교도소의 경우 외국인 범죄자들의 재사회화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만이 외국인 범죄자 역시 자신의 범죄행위를 스스로 인정하여 한국이 따뜻한 온정을 베푼 고마운 나라로 인식하고, 자국에 돌아간 후 우리 교포들과 기업체 대한 친밀감을 보여 보호해 줄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내체류 외국인들 중 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성향이 높은 국가 출신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체류외국인도 우리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인식하에 그들의 인권과 권익 증진을 통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국인들의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의 사회문화에 잘 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시적인 안목 하에서 치안대책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할 때만이 체류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귀국한 후, 지인들이나 이웃들에게 한국을 홍보하거나 한국제품을 소개·애용하고, 국가간 외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개자가 될 수 있다. 즉, 체류외국인은 한국의 홍보대사이자 잠재적 고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보고서를 위해 직접면접이나 전화인터뷰, 통계자료 등에 적극협조해주신 의사경찰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다도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정보나 실증 자료가 부족하여 자료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보고서가 부족하나마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실행 가능한 부분은 구체적인 대책수립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김영규, 독일에 있어서의 외국인 범죄(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서울지방검찰청, 2003.3.25
- 김운영, 외국인밀집지역 범죄실상 및 치안확보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단기과제), 2007.
- 김태명, 불법체류 외국인범죄의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4.
- 대검찰청, 2010 마약류범죄백서, 도서출판성민, 2011.6.
- 대검찰청, 2010 마약류범죄백서.
- 마이크 데이비스(김정아 옮김), 슬림, 지구를 뒤덮다, 돌베개 출판사, 2007.
- 박상기 외,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박세훈 외,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 과제, 국토연구원, 2009.
- 박세훈 외,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 과제, 국토연구원, 2010,
- 신진규, 형사정책 1, 법문사, 1997,
- 이종화, 외사수사론, 경찰대학, 2008.
- 임채완·전형권, 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2006.
- 정영석·신양균, 형사정책, 법문사, 1996.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2005.

2. 논문

강경조, “서울시 외국인 거주에 관한 공간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김두수,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9.

김민배·김경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쟁점”, 산업재산권 제23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7.

김민재,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법무연수원, 2007.

김성언·양영진, “전화 금융사기 범죄의 진화”,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2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김운곤, “외국인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조선대 법학논총, 2001, 291면.

김원배 외, 동북아 대도시권의 동태적 경쟁력 비교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김원희, “한국내 외국인 조직범죄와 경찰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10.2.

김윤영,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확보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1집, 치안정책 연구소, 2007.

김은미, “서울 내 외국인 문화 활성화 방안”, 서울정책포커스 제26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1-13면.

김이선, “지역의 다문화화 양상과 정책적 함의”, 2012 외국인주민정책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여성가족부, 2012.2.28-29, 13-14면.

김이선 외,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1):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김일만, “외국인의 불법취업과 범죄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0.

김혜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제 42권 제2호, 한국사회학, 2008, 36-71면.

김혜순 외,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2007.

- 김홍태, “한국과 일본의 국제이주정책 비교 -‘노동력’ 이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김희균·최희경, “선진국의 외국인범죄 대응방안 연구”, 대검찰청, 2010.
- 박광민, “외국인 조직범죄 통제방안 연구”, 대검찰청 용역연구과제, 2010.
- 박기륜, “외국인신원확인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14호, 2007, 173면.
- 박상준, “외국인범죄 수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박세훈, “다문화시대의 도시관리전략: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제309호, 국토연구원, 2011.1.
- 박세훈,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통권 제64권, 국토연구원, 2010.3, 59-76면.
- 박세훈,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통권 제64권, 국토연구원, 2010.3.
- 박세훈, “외국인의 공간분포 특성과 국토·도시정책 과제”, 국토(구 국토정보), 통권342호, 2010.4, 20-30면.
- 박세훈,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제23집 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0.3.
- 박세훈,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제23집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0.3, 69-100면.
- 박세훈·정소양,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제64권, 2010.3, 61-62면.
- 서거석,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송재양, “미국의 조직범죄와 그 법률적 규제 : RICO법을 중심으로” (<http://www.lrti.go.kr/자료실-검사> 연구-74), 9면.
- 안영진·최병두,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현황과 특성: 이론적 논의와 실태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1권 제3호, 한국경제지리학회, 2008, 476-491면.

-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2007.
- 오영신, “영국의 외국인 범죄현황 및 대처에 관한 연구”, 2011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제26집), 2011.
- 윤영환,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치안확보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제35호, 2009.
- 이갑호, 해외현장기획보고: 선진국 사례로 본 국내의 외국인 집거지 관리·활용방안, 국가정보원, 2007.
- 이병문, “외국인범죄 증가에 따른 외사경찰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석사논문, 2012.2.
- 이상수, “한국형 독일 연방범죄수사국(BKA) 도입에 관한 연구”(2011 국외단기 훈련결과보고서), 경찰청, 2012.1.
- 이승주, “일본의 외국인범죄 실태와 정부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2호, 2008.
- 이원희, “한국 내 외국인 조직범죄와 경찰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 2010.
- 이정환·이성용,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특성과 연구동향”, 한국인구학 제30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2007.
- 이지현, “보이스피싱 상담전화 다시 증가”, 조은뉴스(<http://www.egn.kr>), 2011.10.6.
- 이진영, “수도권에서의 외국인 거주지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2011.
- 이진영, “수도권에서의 외국인 거주지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2011.
- 임창호,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제30회 학술세미나, 2008.
- 임창호,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 임채완·김홍매, “한국의 국제노동력 송출 및 유입정책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59호, 2011.
- 장미혜 외,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II): 다문화 역량증진

- 을 위한 정책Ⅱ 사회적실천현황과 발전방향(총괄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전형권, “국제이주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디아스포라 현상의 통합모형 접근”, 한국동북아논총 49집,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8, 259-284면.
- 정경선, “외국 경찰의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치안정책 연구”, 경찰청 국외훈련 보고서, 2010.
- 정광현, “외국인범죄 치안대책 연구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인하대 석사논문, 2010.
- 정대권, “외사경찰 조직의 효율적 대응방안-외국인 범죄에 대한 외사경찰의 수사활동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논문, 2010.
- 정연주, “외국인 노동자 취업의 공간적 전개과정: 경인지역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4권 제1호, 한국도시지리학회, 2001, 27-42면.
- 정완,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동향 및 대응책”, 홍익법학, 제10권 제1호, 홍익대학교, 2009.
- 최종렬 외,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국가별 유형비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한기수, “외국인 밀집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주거환경 선호요인 분석”,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11.6.
- 황정미,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이론적 고찰”, 페미니즘 연구 제9권 제2호, 한국여성연구소, 2009, 1-37면.

3. 경찰 자료

- 경찰청 외사국, “국내 외국인 체류 현황분석과 결과”, 2009.9.
- 경찰청 외사국, 각국의 체류외국인 관리실태, 2007.
- 경찰청 외사국, 각국의 체류외국인 관리실태, 2007.
- 경찰청, 2005 경찰백서, 2005.
- 경찰청, 2006 경찰백서.
- 경찰청, 2008 경찰백서, 2008.

- 경찰청, 2011 경찰백서, 2011.
- 경찰청, 2011 경찰백서, 2011.
- 경찰청, 외국인범죄 종합대책, 2003.
- 구로경찰서 의사경찰 담당자와 2012년 4월 3일 전화인터뷰 결과.
- 독일 주재관, “독일의 외국인 출입국 관리 현황”, 경찰청, 2012.1.19
- 독일주재관,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대책”, 2007.8.8.
- 동경경찰주재관, “외국인밀집지역 치안대책에 관한 日경찰자료보고”, 2007.8.8.
- 동경주재관, “일본경찰의 통역인 사용실태”, 경찰청, 2012.2.14.
- 안산경찰서 의사담당 김OO 면담, 2012.3.15; “안산다문화구역 내 치안강화 종합 대책”
안산단원경찰서, 2010.6.
- 안산단원경찰서, “안산다문화구역 내 치안강화 종합대책”, 2010.6.
- 안산단원경찰서, “외국인 범죄예방 대책”, 안산단원경찰서 의사계, 2011.1
- 안산단원경찰서, “-현장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보호 및 범죄예방·수사 매뉴얼”, 안산단원경찰서 의사계, 2011.8.
- 안산단원경찰서, 외국인 보호 및 범죄예방·수사 매뉴얼, 2011.
- 요코하마 주재관, “日, 新 외국인 체류관리제 도입 동향”, 경찰청, 2012.2.16.
- 요코하마 주재관, “주재국 치안자료 수정 보고-일본 의사경찰 직제관련”, 경찰청,
2010.12.26.
- 워싱턴DC 경찰주재관, “워싱턴DC 경찰 외국인 조사시 통역 운용 실태”, 경찰청,
2012.2.
- 워싱턴주재관,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관련 자료”, 경찰청, 2012.1.
- 유정현, “외국인범죄 최다지역 서울 일평균 19.2건 발생(국감 보도자료)”, 2009.9.26.
- 주시카고 경찰주재관, “미국 경찰 조사시 통역 관련 실태파악 보고” 경찰청, 2012.2.15.
- 프랑스파리주재관, “프랑스 외국인 출입국 관리사무 관련 자료보고”, 경찰청,
2012.1.17.

4. 유관기관 자료

- 법무부 체류관리과 보도자료, “‘방문취업제’로 체류 중인 동포가 체류 만기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 보장하기로 기본방침 확정”, 법무부, 2011.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12년 3월호]”, 2012.4.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011년 12월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1.
- 안산시, “2011년 12월말 현재 인구현황”, 안산시 통계자료(<http://stat.iansan.net>; 2012.4.10 검색).
-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 “2012.년 12월 외국인 등록 현황”, 안산시 (<http://global.iansan.net> 2012.4.10 검색).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편람, 행정안전부, 2010.12.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편람, 행정안전부, 2010.12.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12월호.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12월호.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사과,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인구부문), 통계청, 2010.
-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8.
- 행정안전부 다문화사회지원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행정안전부, 2011.6.

5. 기타

- 강창구 기자, “안산단원경찰, 동료 살해한 조선족 긴급 체포”, 연합뉴스, 2011.2.20.
- 강훈, “국내조폭, 연변흑사파·베트남 하노이파 '동생' 될 날 온다?”, 조선일보, 2010.4.17.
- 경찰청 외사국 자료; 서울신문 탐사보도, “외국인 조폭 14국 65개파 활개”, 2009.10.7.

- 난민법, 법률 제11298호 신규제정, 2012.02.10.
- “노르웨이 테러’ 계기 딜레마에 빠진 유럽 다문화주의”, 동아일보, 2011.7.26.
- “노르웨이 테러’ 계기 딜레마에 빠진 유럽 다문화주의”, 동아일보, 2011.7.26.
- 로이터 통신 뉴스, 2010.1.7.
- 박진영, “한국인들의 ‘다문화 두 얼굴’”, 조선일보, 2012.4.19.
- 박형준·장원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비용 한국인의 97%”, 동아일보, 2008.10.31.
- 서울신문, 2010, 8, 25
- 송원형, “수원 살인마 조선족의 집에 가보니”, 조선일보, 2012.4.7.
- “수도권 4대 외국인밀집지역, 전체 외국인 피의자 12.7%”, 파이낸셜뉴스, 2012.2.12.
- “신(新)상권으로 떠오르는 외국인 밀집지역, 식료품 점포 매매가 20% 치솟아”, 매일경제(MK뉴스)(<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574026>), 2011.9.3.
- 연합뉴스, 2009.12.8.
- 외국인정책위원회,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08.
- “외국노동자 절반 임금 못받아”, 국민일보, 2005.8.25.
- “외국인 범죄 사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서울신문, 2007.5.24.
- “외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 르몽드 지 2010.2.12.
- 이명희, “영등포경찰, 외국인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아시나뉴스통신 (<http://www.anews.com>), 2011.6.29.
- 이시우, “외국인 범죄 유형 두경 열어보니...”, 경남도민일보, 2012.1.13.
- “입국외국인 지문 및 얼굴 확인제도 전면 시행”, 법무부 알림마당, 2011.12.27.
- 장기만, “출입국 관리국, 2011년 외국인 153명 구속”, 코리아경제 (<http://www.koreaen.co.k>), 2012.1.27.
- 전병근, “수십년 굶은 무슬림의 분노는 ‘유럽의 시한폭탄’”, 주간조선 제1880호, 조선일보사(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5/11/17/2005111777014.html), 2005.
- 정윤덕 기자, 연합뉴스, 2007.8.2.

채성진, “외국인 범죄, 도박사범 400% 폭증”, 조선일보, 2011.7.8.

한겨레, 2008.5.7.

<http://migrant.kr>, 2008.8.10.검색.

II. 외국 문헌

일본경찰청, 来日外国人犯罪の検挙状況(平成23年確定値), 警察庁刑事局組織犯罪対策部 国際捜査管理官, 2012.4,

Keeley, Brian, 2009, *International Migration: The Human Face of Globalization*. Paris : OECD; Castles and Miller, 2009,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 The Guildford Press.

21세기 위원회, 국가장기적 종합보고 21세기의 한국: 제4권 다원사회의 성숙한 문화, 21세기위원회, 1994.

Castles and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 The Guildford Press, 2009.

Elliott, Michael, “A Tale of Three Cities”, *TIME*, 2008년 1월 17일자,

Faist, Thomas, *The Volume and Dyna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ransnational Social Space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Granovetter, Mark,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Second Edit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Hill, Richard C, and Kim, June Woo, “Global Cities and Developmental States: New York, Tokyo and Seoul”, *Urban Studies* vol,37, no,12, UK : SAGE Publication, 2000, pp.2167-2195.

Keeley, Brian, *International Migration: The Human Face of Globalization*, Paris : OECD, 2009.

Lin, Jan, “Globalization and the Revalorizing of Ethnic Places in Immigration Gateway Cities”, in Jan Lin and Christopher Mele, *The Urban Sociology*

Reader, New York : Routledge, 2005.

M. Kathleen Dingeman, *The Immigration Crime Nexus and Post-Deportation Experiences: Encountering Stereotypes in Southern California and El Salvadore*, 31 U. LA VERNE L. REV. 363 (2010), p.365

Massey, Douglass D. et al.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19, no.3. USA : Willey-Blackwell. pp.431-466.

Portes, Alejandro, "Economic Sociology and the Sociology of Immigration: A Conceptual Overview", in Alejandro Portes, 1993,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1995.

Sassen, Saskia, *Cities in a World Economy*, Calif : Pine Forge Press, 2006.

Scott, A, *Global City-Regions: Trends, Theory, Polic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Zukin, S, *Loft Living: Culture and Capital in the Urban Change*, London : Radius, 1988.

Zukin, S. 1988. *Loft Living: Culture and Capital in the Urban Change*. London : Radius.

책임연구보고서 2012-07

국내체류 외국인밀집지역 치안확보 방안

201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조 요 셉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